

발 간 등 록 번 호

32-9740029-001467-01

민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집 수어집



법원행정처

민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집
수어집



법원행정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elp.scourt.go.kr)에서 민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의 본문 내용을 볼 수 있고 수어집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영상 보기를 클릭하면 수어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이 재판절차에 참여할 경우 의사소통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재판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어(手語)에 법률용어의 표준화된 표현 방식이 없거나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그동안 청각장애인이 수어를 통하여 재판상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법률용어에 관하여 정확하면서도 표준화된 수어 표현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이 재판절차에서 표현한 의사가 명확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작년부터 법률용어 수어집을 발간하여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발간한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에 이어, 올해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제기되는 민사소송에서 주로 사용되는 법률용어를 중심으로 「민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어집에서는 실제 민사절차가 이루어지는 순서대로 각 절차에 대한 설명과 실제 사용되는 문구 및 용례를 수집하여 수어로 번역하였고, 민사절차 전반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법률용어와 민사절차에서 알아두면

좋은 제도를 수어로 제시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수록하였습니다. 나아가 수어 표현을 사진뿐 아니라 동영상으로도 제작하여, 책자에 연결된 동영상을 통하여 보다 정확하고 쉽게 수어 표현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수어집의 발간을 위해 여러 자료를 수집하시고 깊이 있는 연구와 감수를 해 주신 연구진과 감수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수어집이 사법절차에 참여하는 청각장애인과 수어통역인에게 도움이 되고, 이를 통하여 청각장애인이 그동안 재판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겪었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법원은 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데에 불편을 겪지 않고 재판절차에서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법원행정처장 김 상 환

목차

일러두기	6
I. 민사절차에 관한 수어	8
1. 민사절차 개관	8
2. 당사자와 대리인	16
3. 소 제기	26
4. 서면에 의한 준비	39
5. 증거신청	46
6. 변론	58
7. 판결선고 및 상소	83
8. 판결확정 후 절차	99
II. 주요 민사 법률용어	109
1. 권리의 발생과 소멸	109
2. 물권 관련	114
3. 채권 관련	120
III. 알아두면 좋은 제도	135
1. 소송구조	135
2. 장애인 사법지원	136
3. 전자소송	141
용어색인	143

일러두기

1. 『민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은 수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농인과 법정통역을 하는 수어통역사의 민사절차 접근성을 높여서 청각장애인이 차별 없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발하였습니다.

2. 이 책의 주요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절차를 다음과 같이 8가지 범주로 제시하였습니다.

- | | | |
|-------------|-------------|--------|
| ① 민사절차 개관 | ② 당사자와 대리인 | ③ 소 제기 |
| ④ 서면에 의한 준비 | ⑤ 증거신청 | ⑥ 변론 |
| ⑦ 판결선고 및 상소 | ⑧ 판결확정 후 절차 | |

2) 민사절차 8가지 범주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주요 민사 법률용어를 다음과 같이 3가지 범주로 제시하였습니다.

- | | | |
|--------------|---------|---------|
| ① 권리의 발생과 소멸 | ② 물건 관련 | ③ 채권 관련 |
|--------------|---------|---------|

3) 청각장애인이 알아두면 좋은 각종 법률 제도를 다음과 같이 3가지 제시하였습니다.

- | | | |
|--------|------------|--------|
| ① 소송구조 | ② 장애인 사법지원 | ③ 전자소송 |
|--------|------------|--------|

3. 수어 표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어는 [] 기호 안에 그 의미를 한글로 기록하는 기존의 수어사전 표기 방식을 따르며, 기본적으로 [] 안에는 한 동작 수어를 넣습니다.

2) 한글 표기는 기존의 수어사전 표제어를 사용하되, 표제어가 의미와 맞지 않아 의미 이해에 혼란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의미에 맞는 말을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로 해당 수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입니다.

3) 한국어 하나에 대응하는 수어가 여럿일 경우, 먼저 의미를 적고 괄호 안에 수어소를 설명



한다. 수어소를 설명할 때는 가장 많이 사용된 방식을 따라 수형과 수향을 먼저 설명하고 수위와 수동을 설명하되, 최대한 글자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 4) 지문자를 사용하는 경우, 명칭을 먼저 쓰고 '(지문자)' 표시를 붙입니다.
- 5) 가장 빈번히 쓰이는 의문형 비수지신호는 '?'로 표현하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설명을 붙입니다.
- 6) 공간과 공간에서의 이동은 '()'와 '→'로 표시합니다.
- 7) 수어는 시간 순으로 나열되는 음성언어와 달리 한 공간 안에서 같은 시간에 왼손과 오른손이 동시에 다른 의미를 표현할 수 있어 이 같은 경우에 기존의 수어사전에서 '구성 성분이 하나로 합성된 복합어'에 사용했던 '[/]'를 사용합니다. 비우세손이 하나의 수어를 유지한 채 우세손의 수어만 바뀔 때는 '[/ (+ + +)]'로 표기하여 수어사전에서 두 종류의 합성 방식을 같이 사용할 때 표기했던 '[/ +]'와는 '()'로 구분합니다.
- 8) 수형이 다른 분류사의 경우, 기존 수어사전의 표기와 같이 '[/]'로 표기합니다.
- 9) 두 수어를 반드시 붙여 써야 할 때는 '[+]'로 하나의 수어 표현 표기인 '[]' 안에 '+'기호를 사용하여 표기합니다.
- 10) 문장의 나눔은 문단으로 구분하고, 문장 내에서 휴지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쉼표(,) 표시 후 한 칸 띄웁니다.

I

민사절차에 관한 수어



[재판]



[사람]



[개인]

1. 민사절차 개관

1) 민사소송



민사절차 설명

민사소송은 민사재판과 같은 말로 쓰이기도 하고, 민사재판 절차 전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형사재판이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판단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재판인 반면, 민사재판은 개인이나 법인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금전적 손해를 입었을 때 이를 돌려받기 위한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재판]+[두 가지(왼손 1, 2지 사이에 오른손바닥 끼운다.)]+형사재판+민사재판+[둘(2)]
[죄]+[관계], [형사]+[재판]



영상보기
(I-1-1)

[피해]+[돈 받다(오른손 '돈' 수형, 밖에서 안으로 가져와 왼손바닥에 댄다.)]+[관계(있다)]+[민사]+[재판]

민사재판의 1심 재판부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소가 2억 원 이하인 경우는 단독판사가 담당합니다. 다만 소가 3,000만 원 이하의 금전 청구 사건 등에는 소액사건심판제도가 적용됩니다. 둘째, 소가 2억 원 초과인 경우나 비재산권에 관한 소송 등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담당합니다.

[재판]+[두 가지(왼손 1, 2지 사이에 오른손바닥 끼운다.)]

[첫째]+[소가(돈 받다+원하다+얼마)]+[2억]+[이하(한손)]+[재판]+[장]+[하나만]

[둘째]+[2억]+[이상(한손)]+[재판]+[장]+[셋]

[돈]+[이외]+[권리]+[여러 가지]+[재판]+[장]+[셋]

[3천만]+[이하(한손)]+[돈]+[작다]+[재판]+[이것]

[소액사건심판제도(지문자)]+[이것]

[재판]+[장]+[하나만]

소액사건이 아닌 통상적인 민사재판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보다 간단한 제도로는 민사조정, 제소전화해, 독촉절차가 있습니다.

[보통]+[재판]+[기간(날짜+동안)]+[오래(좌우로)]

[돈]+[사용(수동 2회)]+[크다]

[재판]+[기간]+[짧다]+[방법]

[첫째]+[민사조정(지문자)]

[둘째]+[제소전화해(지문자)]

[셋째]+[독촉절차(지문자)]

[셋(3/각각 가리킨다.)]



▶ 민사재판

주로 개인이나 법인 간의 다툼에 관한 재판



영상보기
(1-1-1-1)

① [개인]+[재판]



② [사람]+[재판]



▶ 단독판사

1심 법원에서 합의부에 속하지 않고 혼자 재판을 하는 판사. 단독판사가 재판하는 사건을 단독사건이라고 한다.



영상보기
(1-1-1-2)

[재판]+[장]+[하나만]



▶ 합의부

재판장 1명과 배석판사 2명의 총 3명의 판사로 구성되는 재판부

[재판]+[장]+[셋]



영상보기
(I-1-1-3)

▶ 소가

소송물(소송상의 청구)의 가액. 소송을 통해 원고가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을 금전(돈)으로 평가한 액수

[돈 받다(오른손 '돈' 수형, 밖에서 안으로 가져와 왼손바닥에 댄다)]+[원하다]+[얼마]



영상보기
(I-1-1-4)

▶ 소액사건심판제도

소가가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소액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분쟁 해결 제도.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며 통상적인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히 처리된다.

① [3천만]+[이하]+[재판]



영상보기
(I-1-1-5)



② [작다]+[돈]+[재판]



▶ 민사조정

법원의 조정과정을 통해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찾는 분쟁 해결 제도.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영상보기
(I-1-1-6)

[말다툼]+[조정]



▶ 제소전화해

당사자가 소 제기 전에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고 서로 합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화해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영상보기
(I-1-1-7)

[재판]+[전]+[씨름(양손 5지 맞대어 전후로)]



▶ 독촉절차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돈/주다(공간2→3)]+[명령]



영상보기
(I-1-1-8)



2) 보전처분

▶ 민사절차 설명

보전처분은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재판에서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피고가 이미 재산을 처분한 후에는 강제집행을 하여 돈을 돌려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 제기 전에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빨강]+[딱지를 붙이는 동작×2회]

[가처분][임시]+[두다(오른손만)]

[이것]+[필요]+[무엇]



영상보기
(I-1-2)

[재판]+[이기다(손끝을 붙여 오므렸다 위로 올리며 펴는 동작)]

[그러나]+[벌써]+[그(상대방)]+[재산]+[몰래]+[팔다]

[돈 받다]+[할 수 없다(불가능)]

[재판]+[이전(미리)]+[그(상대방)]+[재산]+[가압류]

[재판]+[이기다(손끝을 붙여 오므렸다 위로 올리며 펴는 동작)]+[돈 받다]+[할 수 있다]

그런데 보전처분을 받게 되면 그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전처분을 신청한 사람이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원고입장)

[그(상대방)]+[가압류]+[장사]+[못하다]+[피해]+[그]

[나]+(공탁)[법원(재판)]+[비상]+[돈]+[두다(오른손 '두껍다' 수형, 법원 방향으로 내민다)]

[두다(오른손 두껍다 수형으로 법원 방향으로 내민다.(엄지 아래))]+[아직][법원(재판)]+[돈]+[두다]+[명령]+[있다]

▶ 관련 용어

▶ 보전처분

본안소송(원고의 청구에 대해 판단하는 소송)을 전제로 소송이 확정되거나 집행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를 임시로 보전하기 위한 법원의 처분



영상보기
(1-1-2-1)

① [가압류]



② [가처분]



▶ 가압류

금전을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

[빨강]+[딱지를 붙이는 동작×2회]



영상보기
(1-1-2-2)

▶ 가처분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

[임시]+[두다(오른손만)]



영상보기
(1-1-2-3)

2. 당사자와 대리인

1) 당사자

민사절차 설명



영상보기
(1-2-1)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자연인과 법인, 그리고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 등의 단체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제기]+[그]+[원고(지문자)]

[그(반대편 공간)]+[피고(지문자)]

[그(양편을 가리킨다)]+[누구]?

[개인]+[회사]+[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 +[이외]+[단체]

[모두]+[원고(지문자)]+[그(원고 위치, 공간 지시)]+[되다]

[피고(지문자)]+[그(피고 위치, 공간 지시)]+[되다]

관련 용어

▶ 원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람

① [제기(신청)]+[사람]



영상보기
(1-2-1-1)



② [원(지문자)+그]



▶ 피고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상대방. 원고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한 사람

[피(지문자)+그]



영상보기
(1-2-1-2)

▶ 자연인

사람. 법인과 구분하여 개인을 지칭한다.

[사람]



영상보기
(1-2-1-3)

▶ 법인

사단(특정 목적을 가진 사람의 결합)과 재단(특정 목적을 위해 조성된 재산)



영상보기
(I-2-1-4)

① [회사]



② [법]+[시]



③ [사단법인]



④ [재단법인]



⑥ [사회복지법인]



2) 법정대리인



민사절차 설명



영상보기
(1-2-2)

성인은 독자적으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을 통해 소송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보통]+[사람]+[혼자]+[소송(재판+신고)]+[할 수 있다]

(미성년자)[나이]+[아직]+[그]+[혼자]+[소송]+[안 되다]

(법정대리인)[법]+[왼손바닥에 오른손 1지 댄다(지시)]+[대신]+[사람]+[말기다]+[소송]

[대신]+[사람]+[누구]?

[그(미성년자)]+[부모]+[권리]+[소유]+[그(친권자)]+[되다]

[미성년자]+[후견인(지문자)]+[앞서다(양손 5지, 뒤의 손이 앞으로 이동)]+[말기다]+[그

(후견인)]+[되다]

성인이지만 피성년후견인이라면 독자적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인 성년후견인을 통해 소송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그]+[나이]+[성장]+[끝]+[그]

[병]+[장애]+[늑대]+[생각]+[할 수 없다(불가능)]+[그]

[혼자]+[소송]+[할 수 없다(불가능)]

[대신]+[말기다]+[그]+[소송]+[활동]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관하여는 한정후견인을 통해 소송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피한정후견인(지문자)]

[그]+[생각]+[부족]+[그]

[혼자]+[활동]+[할 수 있다]+[리스트]+[있다]

[혼자]+[활동]+[할 수 없다]+[리스트]+[이것]

[후견인(지문자)]+[대신]+[앞서다]+[그(후견인)]+[말기다]

[법]+[활동], +[소송]+[활동]



▶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인 사람

[나이]+[아직]



영상보기
(1-2-2-1)

▶ 피성년후견인

질병·장애·노령·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피성년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그]+[생각]+[할 수 없다(불가능)]+[그]



영상보기
(1-2-2-2)



▶ 성년후견인

질병·장애·고령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재산이나 신상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원에서 선임한 사람



영상보기
(1-2-2-3)

[그]+[생각]+[할 수 없다(불가능)]



[돕다]+[말기다(몸 안쪽으로)]+[사람]



▶ 피한정후견인

질병·장애·노령·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동의를 받지 않고 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영상보기
(1-2-2-4)

[그]+[생각]+[부족]+[그]



▶ 한정후견인

질병·장애·고령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재산이나 신상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원에서 선임한 사람



영상보기
(1-2-2-5)

[그]+[생각]+[부족]



[돕다]+[말기다(몸 안쪽으로)]+[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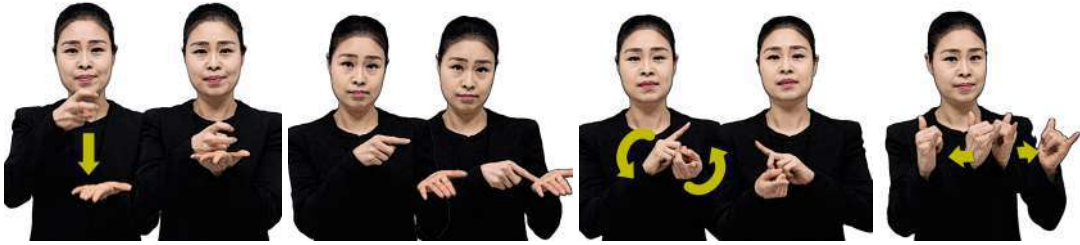
▶ 법정대리인

법률에 따라 대리권을 가지는 사람



영상보기
(1-2-2-6)

[법]+[왼손바닥에 오른손 1지를 댄다(지시)]+[대신]+[사람]



▶ 친권자

미성년자를 보호, 양육하고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의무(친권)를 행사하는 사람. 보통 부모가 친권자가 되지만 양자인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되며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게 된다.



영상보기
(1-2-2-7)

[부모]+[권리]+[사람]



3)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 민사절차 설명

독자적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해도 됩니다.



영상보기
(1-2-3)

[혼자]+[소송]+[되다]

[변호사]+[맡기다]+[소송]+[되다]

소가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만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표나 약속어음금 청구사건, 소가 1억 원 이하의 사건 등 일부 사건에서는 친족 등 당사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가)[돈 받다]+[원하다]+[얼마]

(오른쪽)[1억]+[이상]

(왼쪽)[1억]+[이하]

(오른쪽)[변호사]+[말기다]+[법]

(왼쪽)[변호사]+[이외]+[말기다]+[되다]

(오른쪽)[법원]+[승인(양손 주먹 수형으로 동시에 ‘허락’)]+[필요 없다]

(왼쪽)[법원]+[승인]+[필요]

[반면]

[수표]+[약속어음]+[돈 받다]+[달라]+[재판]

[변호사]+[이외]+[말기다]+[되다]+[법원]+[승인]+[필요]

또 소액사건의 경우, 배우자나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 등) 또는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가]+[3천만]+[이하]

[변호사]+[이외]+[남편]+[부인]+[아버지]+[아들]+[형제]+[대신]+[말기다]+[되다]

[법원]+[승인]+[필요 없다]

4) 그 외 소송관계인



민사절차 설명

소송 당사자나 증인 등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청각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 통역인의 통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변론(이야기)]+[때]

[다르]+[나라]+[사람]+[한국]+[말]+[못하다]

[통역]+[도움 받다]+[동행(양손 5지, 한손을 가져와 다른 한손에 댄다)]+[되다]



영상보기
(1-2-4)

[농인]+[그]+[수어]+[통역]+[도움 받다]+[동행]+[되다]

또한 질병, 장애, 연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진술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소송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보조인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변론(이야기)]+[그]

[병], +[장애], +[늙다]

[혼자]+[진술(이야기)]+[안 되다]

[도움 받다]+[동행]+[되다]

 관련 용어

▶ 진술보조인

당사자와 가족 혹은 고용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당사자의 진술을 중개·설명하거나 당사자 이외의 사람의 진술을 당사자에게 중개·설명하여 의사소통을 돕는 사람

[진술(이야기)]+[돕다]+[사람]



영상보기
(1-2-4-1)



3. 소 제기

1) 소장 작성

민사절차 설명



영상보기
(1-3-1)

소장을 법원에 내면 소송이 시작됩니다(소 제기).

[제기]+[네모]+[재판]+[곳]+[제출], +[재판]+[시작]

소장에는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그리고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이름(상호) 및 주소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제기]+[네모]+[적어 넣다×2회]+[꼭(약속)]+[무엇]

[원고(지문자)]+[그]+[이름]+[주소]+[적어 넣다]

[피고(지문자)]+[그]+[이름]+[주소]+[적어 넣다]

[법]+[왼손바닥 가리킨다]+[대신]+[사람]+[있다]

[그]+[이름]+[주소]+[적어 넣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도 기재합니다. 그리고 청구취지와 청구 원인 또한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소송]+[대신]+[말기다]+[때]

[그]+[이름]+[주소]+[적어 넣다]

[청구취지(지문자)]+[소송]+[원하다]+[목적]+[적어 넣다]

[청구원인(지문자)]+[소송]+[동기]+[왜]+[적어 넣다]

그리고 사건명, 증거방법, 첨부서류(서면을 낼 때 함께 내는 서류), 작성연월일, 작성자의 이름과 날인(혹은 서명), 관할법원명을 기재하면 됩니다.

[사건명(사건+이름)]+[적어 넣다]

[증거방법(지문자)]+[무엇]?

[증거]+[종류(왼손바닥 위에 오른손 손날로)]

+ [계약서(계약+네모)]+[이름]

+ [사진]+[종류]+[이름]

+ [적어 놓다×2~3회]

[첨부서류(지문자)]+[무엇]?

[첨부]+[이것]+[이름]+[적어 놓다×2~3회]

[제기]+[날짜]+[적어 놓다]

[쓰다]+[사람]+[이름]+[적어 놓다]+[후]+[서명]+[도장]+[두 가지(1, 2지를 전후로 엇갈리게)]

[제기]+[법원(재판+곳)]+[이름]+[적어 놓다]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원고는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청구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변론]+[완료]+[아직]?

[서류]+[내용(한손만 내림)]+[바꾸다(오른손 1, 2지 뒤집는 동작)]

[제출/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재판+곳)]+[승인]+[바꾸다]+[할 수 있다]

소장

원고 ○○○
 주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주소
 연락처

피고 ○○○
 주소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
 주소
 연락처

사건명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

- 1.
- 2.
- 3.

입증방법

- | | |
|-----------|-----|
| 1. 갑 제1호증 | 계약서 |
| 2. 갑 제2호증 | |

첨부서류

- | | |
|-----------|------|
| 1. 위 입증방법 | 각 1통 |
| 2. 소장부분 | 1부 |
| 3. 송달료납부서 | 1부 |

2021. . .
 원고 ○○○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관련 용어

▶ 소장

원고가 소를 제기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① [재판]+[제기(신청)]+[네모]



영상보기
(I-3-1-1)

② [재판]+[신고]+[네모]



▶ 청구취지

원고가 소송을 통하여 청구하는 판결의 내용

[소송(제기)]+[원하다]+[목적]



영상보기
(I-3-1-2)

▶ 청구원인

원고의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관계

[소송(제기)]+[동기]+[왜]



영상보기
(I-3-1-3)

▶ 사건명

청구하는 내용을 나타내는 사건의 명칭. 대여금청구의 소, 매매대금청구의 소,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으로 다양하다.

[사건]+[이름]



영상보기
(I-3-1-4)

▶ 증거방법

판사가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유형물. '증거'라고도 한다.

[증거(확인)]+[종류(왼손바닥 위에 오른손 손날로)]



영상보기
(I-3-1-5)



▶ 청구의 변경

소송 중에 원고가 소송물을 변경하는 것.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에서 원래의 청구를 새로운 청구로 변경하거나 새로운 청구를 추가할 수 있다. 단순히 청구원인에 관한 일부 주장을 달리하는 것 등은 청구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상보기
(I-3-1-6)

[제기]+[내용(양손 동시에 내림)]+[바꾸다(왼손바닥에 오른손 1, 2지를 뒤집는 동작)]



2) 소장의 제출

▶ 민사절차 설명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적어 넣다×2~3회]+[완료]+[제출]+[곳]+[무엇(어디)]?

[피(지문자)+그]+[집]+[구역]+[담당]+[법원(재판+곳)]+[제출]



영상보기
(I-3-2)

그러나 소송에 따라 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 등 다른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원고(지문자)]+[집]+[가깝다]+[법원]+[제출]+[되다]

[이외]+[곳]+[제출]+[되다]

또한 당사자가 미리 관할법원을 합의하여 정해놓은 경우 해당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원(지문자)+그]

[피(지문자)+그]

[법원]+[그(장소 지시)]+[상호동의(양손 주먹 수형)]+[정하다]

[그(장소 지시)]+[제출]+[되다]

관할법원이 아닌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이송합니다.

[법원]+[서류]+[제출]

[담당]+[법원]+[아니다]?

[담당]+[법원]+[찾다]+[필요 없다]

[알아서(정신+손바닥 마주침 2회)]+[서류]+[이동]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인지를 붙이고 송달료납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송비용은 소가가 클수록 비싸집니다.

[서류]+[제출]+[때]

(인지)[수고+우표(편지+네모)]+[사다]+[붙이는 동작(여러 번)]

(송달료)[서류]+[보내다]+[돈]+[내다]+[영수증]+[첨부]+[제출]

[인지]+돈, +[서류]+[보내다]+[돈]

[재판]+[소가]+[크다](비수지 신호로 '면?'), +(비용)[비싸다]

[재판]+[소가]+[작다](비수지 신호로 '면?'), +(비용)[싸다]

▶ 관련 용어

▶ 인지

수수료를 납부하였음을 나타내는 증표. 인지를 살 때 납부하는 수수료를 인지액(인지대)라 한다.



영상보기
(1-3-2-1)

[수고]+[우표(편지+네모)]



3) 소장심사 및 송달

▶ 민사절차 설명

소장이 접수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담당 재판부에서 소장을 심사합니다.



영상보기
(1-3-3)

[서류]+[제출(법원 방향)]+[부터]

[재판]+[시작]

[사건]+[번호]+[정하다]+[알려주다]

[재판]+[장]+(소장심사)[서류]+[서류/(읽다+빠지다+있다+없다+조사)]

소장심사 결과 흠이 있는 경우 재판장은 보정명령을 내려 흠을 보완하도록 하는데 원고가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소장이 각하됩니다.

[재판]+[장]+[서류]+[서류/빠지다(비수지신호로 '있다' 표현)], +(보정명령)[부족], +[더]+[명령(시키다)]

[더]+[아니하다?], +(각하)[부족]+[처내는 동작]

소장에 흠이 없는 경우 재판장은 소장부분(소장의 사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서류]+[서류/(빠지다+없다)]

[재판]+[장(주어)]+[서류]+[복사]+[피(지문자)+그]+[보내다(피고방향)]

이때 주소가 정확하지 않거나 수취인이 잘못되어 송달불능이 된 경우 재판장은 원고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게 됩니다.

[피(지문자)+그]+[주소]+[틀렸다]+[보내다]+[어긋나다]

[재판]+[장]+(원고 방향으로 바라보며)[원(지문자)+그]+[원고에게 손짓하는 동작]+[그(피고 위치 공간 지시)]+[주소]+[틀렸다]+[바꾸다(양손 1지 교차)]+[명령(시키다)]

원고가 주소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소장이 각하됩니다.

(재판장 주어)

[재판]+[장]+[원(지문자)+그]+[주소]+[바꾸다(양손 1지 교차)]+[제출받다]+[좋다]

[제출받다]+[없다]?

[각하(부족+쳐내는 동작)]

소장각하명령에 대해서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소장이 각하된 경우 소송이 종결됩니다.

(재판장 주어)

[재판]+[장], +[각하(부족+쳐내는 동작)]+[때]

[이의]+[제출]+[7일]+[동안]

[날짜]+[지나치다]+[돌이킬 수 없다(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리는 동작)]

[재판]+[끝]

송달이 잘 되지 않은 경우 재송달이나 특별송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판]+[장]+[피(지문자)+그]+[서류]+[보내다]+[거부당하다]+[때]

[원(지문자)+그]+[활동]+[방법]+[둘(2)]

[첫 번째]+[재송달(다시+보내다)]+[부탁]+[신청]

[두 번째]+[특별송달(지문자)]+[직접]+[방문]+[주다]+[부탁]+[신청]

[두 가지(1, 2지를 전후로 엇갈리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음에도 주소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내다]+[거부당하다]×3회+[때]

[공시송달(지문자)]+[서류]+[법원(재판)]+[인터넷]+[게시(오른손 구부려, 세운 왼손바닥에 댄다)]+[부탁]+[신청]

▶ 관련 용어

▶ 사건번호

사건에 붙이는 번호. 소가 제기된 연도, 사건부호, 일련번호로 구성된다.

[사건]+[번호]



영상보기 (I-3-3-1)



▶ 소장심사

소장이 법률에서 정한 방식에 맞추어 작성되었는지 검토하는 것

① [서류]+[서류/(읽다+빠지다+있다+없다+조사)]



영상보기 (I-3-3-2)





② [제기 받다]+[서류/(읽다+빠지다+있다+없다+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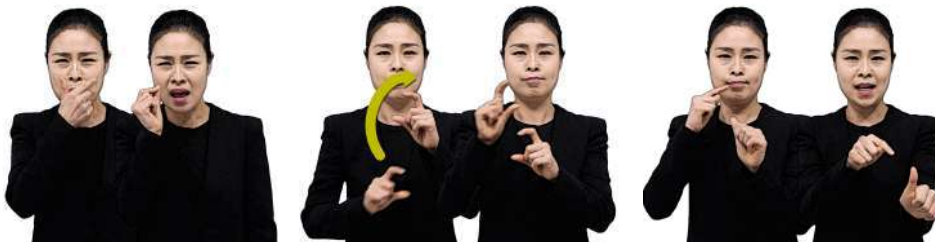
▶ 보정명령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라는 법원의 명령. 보정명령에 따라 내는 서면을 보정서라고 한다.

[부족], +[더]+[명령(시키다)]



영상보기
(1-3-3-3)



▶ 각하

법률에서 정한 형식이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배척하는 것

[부족]+[처내는 동작]



영상보기
(I-3-3-4)

▶ 송달불능

송달이 되지 않는 것

[보내다(부치다)]+[거부당하다]



영상보기
(I-3-3-5)

▶ 특별송달

주말송달, 야간송달, 휴일송달 등으로 법원의 집행관 등이 송달하는 것

[직접]+[방문(1지로, 들어가다)]+[주다]



영상보기
(I-3-3-6)



▶ 공시송달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송달한 서류를 게시하여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



영상보기
(1-3-3-7)

[서류]+[법원(재판)]+[인터넷]+[게시(오른손 구부려, 세운 왼손바닥에 댄다)]



▶ 즉시항고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정해진 짧은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는 것



영상보기
(1-3-3-8)

[이의]+[빨리(곧)]+[제기]



4. 서면에 의한 준비

1) 답변서



민사절차 설명



영상보기
(I-4-1)

피고는 소장부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장 주어)

[재판]+[장]+[피(지문자)+그]+[서류]+[보내다]+[끝]

[30일]+[동안]+[답]+[서류]+[받다]

피고가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무변론판결).

[30일]+[동안]+[답]+[서류]+[받다]+[강하다]×2회+[날짜]+[지나치다]

[재판]+[양측을 부르다(양손 5지, 동시에 몸 앞으로)]+[필요 없다]

[원(지문자)+그]+[이기다(손끝을 붙여 오므렸다 위로 올리며 펴는 동작)]+[선언]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투고자 하는 경우 피고는 답변서에 사건번호, 당사자,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피(지문자)+그]+[재판]+[원하다]?

[답]+[서류]+[네모]+[적어 넣다]×2~3회+[무엇]?

[사건번호]+[적어 넣다]

[원고(지문자)]+[이름]+[적어 넣다]

[피고(지문자)]+[이름]+[적어 넣다]

[대신]+[사람]+[있다]?

[그]+[이름]+[적어 넣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증거방법, 첨부서류,

[원(지문자)+그]+[제기 받다]+[네모]+[그것]

[청구취지(지문자)]+[내용(한손만 내림)]

[답]+[적어 넣다]×2회

[그것(왼손바닥 가리키는 동작)]

[청구원인(지문자)]+[내용(한손만 내림)]

[답]+[적어 넣다]×2회

[증거방법(지문자)], +[원(지문자)+그]+[내용(한손만 내림)]+[이의]

[증거(확인)]+[종류]

+ [계약서(계약+네모)]+[사진]+[종류]+[적어 넣다]×2회

[첨부서류(지문자)]+[첨부]+[이것]+[이름]+[적어 넣다]×2회

작성연월일, 작성자의 이름과 날인(혹은 서명), 법원 및 담당 재판부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제기]+[날짜]+[이름]+[적어 넣다]+[후]

[서명]+[도장]+[두 가지(1, 2지를 전후로 엇갈리게)]

[법원(재판+곳)]+[이름]+[적어 넣다]

[재판]+[담당]+[○○(무엇)]+[부(지문자)]+[이름]+[적어 넣다]+[끝]+[후]+[제출]

피고는 필요한 경우 1심(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반소장을 제출하여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고 주어)

[변론(시비)]+[완료]+[전(이전)]

[원(지문자)+그]+[제기]+[내용(한손만 내림)]

[피(지문자)+그]+[읽다], +비수지신호로 '발견' 표현

[내용(한손만 내림)]+[목록/(목록+3지를 가리키는 동작)]

[그것]

[오히려]+[나]+[피해]+[새롭다]+[소송(재판+신고)]+[할 수 있다]

답변서

사건번호 2021가합0000 00000
원 고 000
피 고 000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입증방법

- | | |
|-----------|-----|
| 1. 을 제1호증 | 각서 |
| 2. 을 제2호증 | 진술서 |

첨부서류

- | | |
|-----------|------|
| 1. 위 입증방법 | 각 1통 |
|-----------|------|

2021. . .

피고 000 (날인 또는 서명)

00지방법원 민사 제00부 귀중

▶ 답변서

원고의 소장을 송달받은 후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답변하는 서면

[대답]+[서류]



영상보기
(I-4-1-1)

▶ 반소

원고가 처음에 제기한 소송(본소)의 소송계속 중에 피고가 원고에게 새로운 청구를 하기 위하여 동일한 소송절차에서 제기하는 소

[제기(1→법원)]+반대+[제기(2→법원)]

(QR코드 동영상에는 제시된 수어 표현 이후 용어에 대한 수어 해설이 이어집니다.)



영상보기
(I-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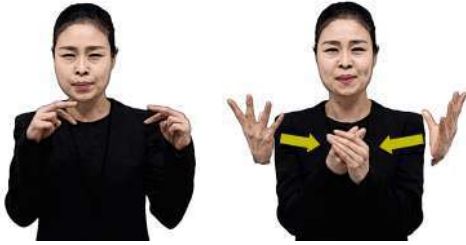
▶ 변론종결

변론절차가 모두 끝난 것. 재판장은 변론종결을 선언한 후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변론종결 후 제출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는 판결에 반영되지 않는다.



영상보기
(I-4-1-3)

[변론(시비)]+[완료]



2) 준비서면



민사절차 설명



영상보기
(1-4-2)

당사자는 변론기일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미리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준비서면(지문자)]+[준비]+[서류]+[제출], +[왜?]

[재판]+[변론기일(시비+날)]

[원(지문자)+그]+[생각]+[절차(위에서 아래로)]

[피(지문자)+그]+[생각]+[절차(위에서 아래로)]

[대조하는 동작(손가락을 벌려)]+[확실]+[목적]

[재판]+[장]+[준비]+[서류]+[받다(양쪽에서 안으로 재판장이 가운데 공간)]+[이것]

준비서면에는 사건번호, 당사자,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본인의 주장,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답변,

[준비]+[서류]

[이것]+[네모]+[적어 넣다]+[무엇?]

[사건번호]+[적어 넣다]

[원고(지문자)]+[이름]+[적어 넣다], [피고(지문자)]+[이름]+[적어 넣다]

[대신]+[사람]+[그]+[이름]+[적어 넣다]

[나]+[생각]+[절차(위에서 아래로)]+[무엇]+[적어 넣다]

[상대방(공간 지시)]+[생각]+[절차(위에서 아래로)]+[무엇]+[적어 넣다]

[상대방(공간 지시)]+[이의]+[무엇]+[적어 놓다]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증거방법, 첨부서류, 작성연월일, 작성자의 이름과 날인(혹은 서명), 법원 및 담당 재판부를 써서 제출합니다.

[더]+[그(상대방)]+[증거(확인)]+[첨부]+[이것]

[이의]+[무엇]+[적어 놓다]

[이의]+[증거(확인)]+[무엇]+[적어 놓다]

[첨부]+[서류]+[이름]+[적어 놓다]

[날짜]+[적어 놓다]

[쓰다]+[사람]+[이름]+[적어 놓다]+[끝]+[후]

[서명]+[도장]+[두 가지(1, 2지를 전후로 엇갈리게)]

[법원]+[이름]+[적어 놓다]

[재판]+[담당]+[○○(무엇)]+[부(지문자)]+[이름]+[적어 놓다]+[끝]+[후]+[제출]

준비서면

사건번호 2021가합0000 00000

원 고 000

피 고 000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음

- 1.
- 2.
- 3.

2021. . .

원고 000 (날인 또는 서명)

00지방법원 귀중



관련 용어

▶ 준비서면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리하여 변론기일 전에 미리 제출하는 서면

‘준비서면’은 [서류]+[준비]만 사용할 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며, 원고의 경우 이미 소장을 제출했으므로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을 수어로 표현할 때에는 [변론기일]과 변론기일에 할 [이야기], 그리고 (변론기일)[전], [제출(법원에)] 등의 수어 표현이 전후 맥락에서 직접적으로 사용되거나, 관련하여 구체적인 날짜 혹은 내용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QR코드로 ‘준비서면’에 대한 수어 설명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보기
(I-4-2-1)

5. 증거신청

1) 증거방법



민사절차 설명

민사소송에서는 보통 특정한 주장을 하는 당사자가 해당 주장의 증명책임을 집니다.

[개인]+[재판]+[때]

[그(상대방)]+[이의]

[증거(확인)]+[굽어모으다]+[책임]+[누구?]

[스스로]+[책임]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방법에는 증인과 같은 인증(人證)과 증거인 서류나 영상물과 같은 물증(物證)이 있습니다.

[증거(확인)]+[종류]+[무엇?]

[두 가지(왼손 1, 2지 사이에 오른손바닥 끼운다.)]



영상보기
(I-5-1)

[첫째], +[사람]

[둘째], +[서류]+[사진]+[영상]+[여러 가지]

▶ 관련 용어

▶ 증명책임(입증책임, 거증책임)

주장을 증명해야 하는 사람이 증명을 하지 못할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법원을 설득할만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책임

[증거]+[국어모드]+[스스로]+[책임]



영상보기 (I-5-1-1)



2) 증거신청 절차

▶ 민사절차 설명

당사자는 법원에 증거를 제출하고 조사를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증거신청).

[증거(확인)]+[리스트]

[조사]+[방법]+[적어 놓다]+[끝]+[후]

[법원(재판+곳)]+[제출]

[증거]+[조사]+[신청]



영상보기 (I-5-2)

증거신청은 변론종결 전까지 변론기일 전이나 변론기일에 서면이나 말로 합니다.

[증거]+[조사]+[신청]+[언제]?

[변론(시비)]+[완료]+[이전]+[되다]

[첫 번째]+[증거]+[서류]+[제출]

[두 번째]+[나]+[봤다]+[리스트/각각 지시하는 동작]+[이야기]+[되다]

증거신청을 할 때는 입증사항(증명사항,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 증거방법, 입증취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증거]+[조사]+[신청]+[때]

(오른쪽)[사건]+[내용]+(왼쪽)[증거]+[리스트(왼손으로 화면 띄우는 동작)]+[리스트/(왼손 1지와 오른쪽 위치의 사건을 이어 가리키는 동작+왼손 2지와 오른쪽 위치의 사건을 이어 가리키는 동작+확실하다+필요)]

재판장은 증거신청을 살펴 증거신청을 배척하거나(기각결정) 증거신청을 채택(증거결정)합니다.

[재판]+[장]+[신청 받다]

[증거]+[리스트/(인정+뽑다+뽑다)]+[결정]

증거조사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증거신청을 한 당사자는 비용을 미리 납부(예납)해야 합니다. 미리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비용예납명령을 하게 됩니다.

[증거]+[조사]+[신청]+[끝]

[조사]+[사용]+[돈]

[법원]+[미리]+[돈 내다(한손)]

[법원]

[돈 받다(한손)]+[아직]

[돈 받다(왼손바닥에 받는 동작)]+[명령(시키다)]

▶ 관련 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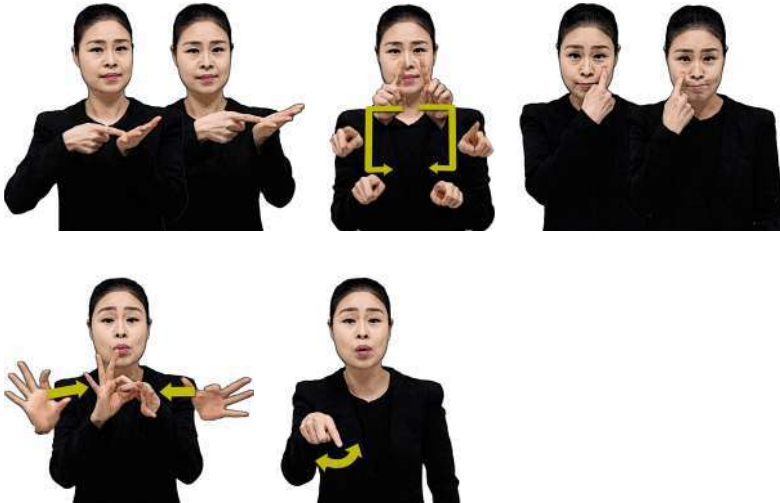
▶ 입증취지

해당 증거방법과 입증사항의 관련성

[제기]+[네모](오른쪽)+[증거(확인)](왼쪽)+[관계(있다)]+[무엇]



영상보기
(1-5-2-1)



3) 증거신청 방법

▶ 민사절차 설명

증거인 문서(서증)는 직접 제출하거나,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문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영상보기
(1-5-3)

[양손 도장 찍는 동작]+[네모], +[증거(확인)]+[네모]+[여러 가지]

[법원]+[직접]+[제출]

[서류]+[다름]+[그]+[있다]

[법원]+[부탁]+[신청]

[법원]+[시키다]

[그]+[서류]+[반다(법원)]

서증 등 증거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 원고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과 같은 방식으로 번호를 매기고,

[원(지문자)+그]

[증거(확인)]+[서류]+[번호]+[적어 넣다]+[방법]

[갑(지문자)]+[다음]+[제1호증(지문자)]

[갑(지문자)]+[다음]+[제2호증(지문자)]

피고는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과 같이 번호를 매겨 제출합니다.

[피(지문자)+그]

[증거(확인)]+[서류]+[번호]+[적어 넣다]+[방법]

[을(지문자)]+[다음]+[제1호증(지문자)]

[을(지문자)]+[다음]+[제2호증(지문자)]

서증을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지고 있을 때, 서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제출의무가 있다면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문서제출명령(지문자)]+[네모]+[무엇?]

[양손 도장 찍는 동작]+[네모], [증거(확인)]+[네모]+[여러 가지]

[법원]+[상대방(가리키는 동작)]+[있다]

[이외]+[그(다른 사람)]+[있다]

[법]+[왼손바닥/가리키는 동작]+[자료(서류)]+[법원]+[제출]+[왼손바닥/가리키는 동작]+[있다]

[네모]+[쓰다]+[신청]+[끝]

[서류]+[가져오다(한손 ‘가지다’ 표현 밖에서 안으로)]+[할 수 있다]

서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제출의무가 없다면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야 합니다.

[문서송부촉탁(지문자)]+[신청]+[무엇?]

[양손 도장 찍는 동작]+[네모], [증거(확인)]+[네모]+[여러 가지]

[재판]+[상대방(가리키는 동작)]+[있다]

[이외]+[그(다른 사람)]+[있다]

[법원]+[서류]+[제출]+[꼭]+[법]+[없다(왼손바닥 위에 오른손바닥을 치며 '없다' 표현)]

[네모]+[쓰다]+[신청]+[끝]

[서류]+[가져오다(한손 '가지다' 표현 밖에서 안으로)]+[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나 학교, 병원, 그 밖의 단체·개인 등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 결과나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합니다.

[사실조회촉탁신청(지문자)]+[신청]+[무엇]?

[공]+[곳], +[학교], +[병원], +[단체]

[서류]+[여러 가지]+[복사]+[받다]+[원하다]+[때]+[신청]

[서류]+[받다]+[할 수 있다]

상대방의 은행 예금이나 보험 등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에 금융정보자료 제출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자료(지문자)]+[신청]+[무엇]?

[상대방(상대방을 지시하는 동작)]+[은행]+[통장]+[내용(한손만 내림)]+[보험]+[내용(한손만 내림)]+[확인]+[서류]+[원하다]+[때]+[신청(법원에)]

[법원]+[명령(상대방 위치)]

[서류]+[받다]+[할 수 있다]

문서제출명령신청서

사건번호 2021가합0000 00000

원 고 000

피 고 000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1. 문서의 표시
2. 문서의 취지(내용)
3. 문서를 가진 사람
4. 증명할 사실
5. 문서제출의무의 원인(해당란에 ✓ 표시)
 -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인용문서)
 -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인도·열람문서)
 -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음(이익문서)
 - 문서가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임(법률관계문서)
 - 그 밖에 제출이 필요한 문서

사유 :

2021. . .

신청인 원고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민사 제00부 귀중

증거가 사진이나 전자문서일 경우, 출력하여 제출합니다. 증거가 음성이나 영상자료인 경우, 파일이나 녹취서, 내용을 설명한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증거신청을 합니다.

[증거]+[신청]+[방법]

[사진]+[이것], +[프린트]+[제출]

[말]+[녹음(원손등 위에 오른손 손끝을 위로, 손끝 모아 내리는 동작)], +[영상], +[이것]

[내용]+[타이핑하며 아래로 내리는 동작]+[네모]+[제출]

증인은 증인신청, 당사자는 당사자본인신문신청을 하여 증거신청을 합니다. 이때 신문사항(신문할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곳]

[직접]+[사람]+[부르다]+[5지 사람 수형으로 발화자 앞에 마주 세우는 동작]+[이야기]+[지켜보다(오른손 1, 5지 끝을 붙여 5지 등을 오른쪽 눈 아래에 댄다.)]+[원하다]

[5지 사람 수형으로 발화자 앞에 마주 세우는 동작]+[그]+[누구]

[원(지문자)+그]+[피(지문자)+그]+[5지 사람 수형으로 발화자 앞에 마주 세우는 동작]+[원하다]

[당사자본인신문신청(지문자)]+[이것]+[신청]

[그]+[아니다]+[이외]+[사람]+[부르다(5지 사람 수형으로 발화자 앞에 마주세우는 동작)]+[원하다]

[증인신청(지문자)]+[이것]+[신청]

[신청]+[때]

[질문]+[내용(한손만 내림)]+[무엇×2~3회]+[적어 넣다×2~3회]+[제출]

감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정신청서, 검증을 원하는 경우에는 검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정이나 검증을 신청할 때에는 감정 혹은 검증사항(감정 혹은 검증하고자 하는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감정신청서(지문자)]+[이것]+[무엇]

[물건]+[이것]+[감정(가치+평가)]+[원하다]+[때], +[신청]

[검증신청서(지문자)]+[이것]+[무엇]

[물건]+[이것]+[검증(확인+조사)]+[원하다]+[때], +[신청]

[신청]+[때]

[평가]+[조사]+[원하다]+[내용(한손만)]+[무엇]+[적어 넣다], +[제출]

증인신청서

1. 사건번호 : 2021가합0000 00000

2. 증인의 표시

이 름	○○○					
생년월일	0000. 00. 00.					
주 소	○○ ○○구 ○○로 00 00동 00호					
전화번호	자택	(00)000 - 0000	사무실	(00)000 - 0000	휴대폰	(010)000-0000
원·피고와의 관계	원고의 친구					

3. 증인이 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그 내용을 알게 된 경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와 함께 계약하는 장소에 있었음

4. 신문할 사항의 개요

- ① 계약 체결 경위
- ② 계약의 내용
- ③

5. 희망하는 증인신문방식(해당란에 “V”표시하고 희망하는 이유를 간략히 기재)

증인진술서 제출방식 증인신문사항 제출방식 서면에 의한 증언방식

이유 :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기로 약속하였음

6. 증인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방안(해당란에 “V”표시)

기일에 함께 출석하기로 협의함 채택 후 출석여부를 확인할 예정임

별다른 방안을 강구하기 어려움 기타 ()

7. 예상소요시간(주신문)

15분 30분 기타 (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021. . .

신청인 원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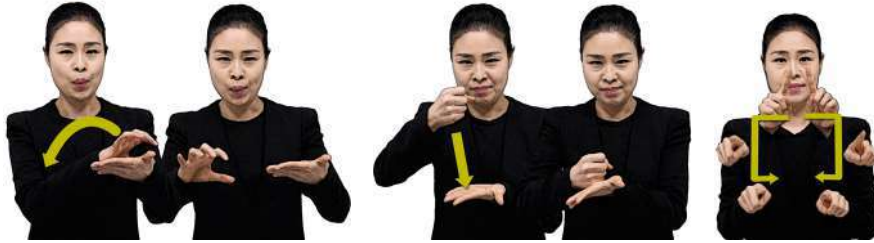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민사 제00부 귀중

▶ 등본

원본과 동일한 문서

[본뜨대]+[도장(주먹)]+[네모]



영상보기
(I-5-3-1)

▶ 감정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그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에 따른 판단을 보고하도록 하는 증거조사 방법. 진료 기록, 건축물의 하자, 사람의 신체, 부동산의 시가 등이 감정 대상이 된다.

[가치]+[평가]



영상보기
(I-5-3-2)

▶ 검증

판사가 사물의 상태를 보고, 듣고, 만지는 등 직접 확인하여 그 결과를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조사 방법. 문서에 찍힌 인영이나 필적(글씨체)의 동일성, 분쟁 대상물이 있는 현장의 상황 등이 검증 대상이 된다.



영상보기
(I-5-3-3)

[확인]+[조사]



4) 증거보전



민사절차 설명



영상보기
(1-5-4)

증거보전이란 시간이 지나면 해당 증거방법이 없어지거나 증거조사가 어려워지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본안소송과 별도로 미리 증거조사를 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증거보전(지문자)]+[이것]+[무엇]?

[증거(확인)]+[이것]

[시계가 돌아가는 것을 표현]+[사라지다(편 두 손을 양쪽에서 가운데로 모아 주먹을 주는 동작)]+[전(미리)]

[지금]+[재판]+[진행]+[날짜]+[날짜]+[관계없다]

[미리]+[증거]+[조사]+[신청]

증거보전은 소 제기 전이나 소송계속 중에 할 수 있으며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네모]+[내용(한손만 내림)]+[무엇]

[미리]+[조사]+[왜], +[적어 넣다]

[필요]+[무엇], +[적어 넣다], +[첨부]+[제출]

[신청]+[언제]?

[재판]+[전(미리)]+[신청]+[되다]

[재판]+[진행]+[중]+[되다]

소 제기 전에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거가 있는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곳]+[어디(무엇)]?

[소송(재판+신고)]+[전(미리)]+[때]

[증거]+[물건]+[장소]

[그(장소 지시)]+[지역]+[담당]+[법원(재판)]

[법원(재판)]+[거기(지시)]+[신청]

[소송(재판+신고)]+[이후]+[때]

[담당]+[재판]+[곳]+[신청]



▶ 소송계속

판결이 선고되기 전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

[재판]+[중]



영상보기
(I-5-4-1)

6. 변론

1) 기일의 지정, 변경



민사절차 설명



영상보기
(1-6-1)

피고가 답변서를 내면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법원은 소송관계인들에게 기일을 통지하고 출석을 요구하게 됩니다.

[원(지문자)+그]+[제기]+[내용(한손만)]

[피(지문자)+그]+[답]+[서류]+[제출]+[완료]+[후]

[법원], +[변론기일]+[언제]+[정하다]

[원(지문자)+그], +[피(지문자)], +[그]+[증인]

[재판]+[오다(여러 명)]+[편지]+[보내다]×3회

필요한 경우 법원은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넘길 수 있으며, 이 경우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후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변론준비절차(지문자)]+[변론(시비)]+[준비]+[재판]+[무엇]?

[만약]+[사건]+[복잡하다]+[때]

[법원]

[원(지문자)+그]+[내용(한손만 내림)]+[정리]

[피(지문자)+그]+[내용(한손만 내림)]+[정리]

[대조하는 동작×2회(아래로 내리며)]+[확실하다]+[이것]

[완료]+[다음]

[변론기일(시비+날)]+[언제]+[정하다]

사건이 오랫동안 심리되지 않는 경우나 소의 취하간주(쌍불취하)를 막고자 하는 경우 변론기일을 지정해 달라는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지정신청(지문자)]+[변론기일]+[정하다]+[달라]+[신청]+[무엇]?

[재판]+[없다]+[오래]

[시작]+[언제]+[불확실]+[때]

[변론기일]+[정하다]+[달라]+[신청]

그리고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와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붙여 변론기일을 변경해 달라는 기일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정하다]+[후]

[원(지문자)]+[그]+[피(지문자)]+[그]+[합의]+[날짜]+[미루다]+[할 수 있다.]

[변론기일]+[참석]+[못하다]+[때]

[참석]+[못하다]+[이유]+[첨부]+[제출]

[날짜]+[미루다]+[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은 기일변경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불허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 주어)

[오다]+[못하다]+[이유]+[받다]+(부정적 비수지신호), +[맞지 않다]

[날짜]+[미루다]+[허락]+[할 수 없다(불가능)]

 관련 용어

▶ 변론

소송 당사자가 법정에서 말로서 진술하는 것. 주장의 진술, 증거신청, 증거조사 등을 말한다.



영상보기
(1-6-1-1)

①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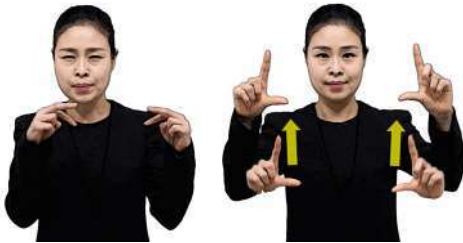
② [시비]



▶ 변론기일

변론을 위하여 소송관계인들이 법정에 모이는 날

[변론(시비)]+[날]



영상보기
(1-6-1-2)

▶ 변론준비절차

사건이 복잡하거나 증거조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변론을 준비하기 위한 절차. 변론준비절차에서는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여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게 되며,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한 후에 변론기일이 열리게 된다.

[변론(시비)]+[준비]+[재판]



영상보기
(1-6-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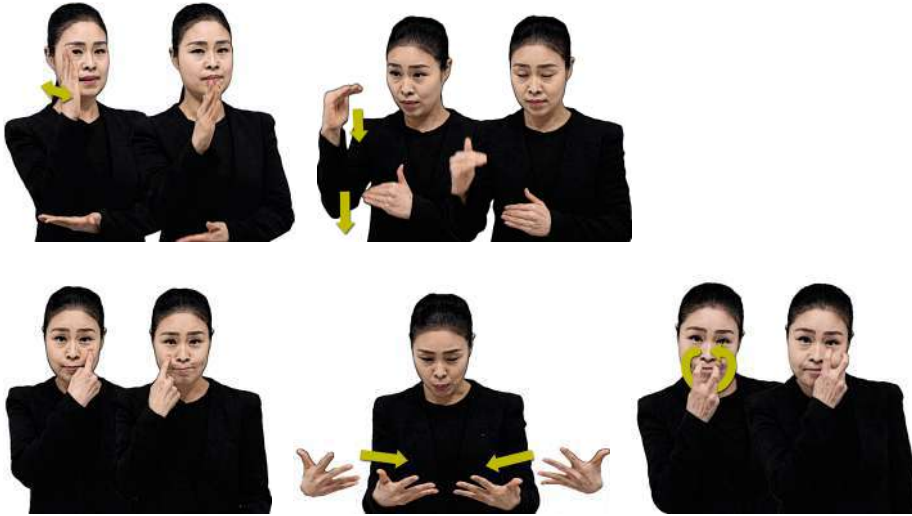
▶ 심리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과 반박을 듣고, 증거와 기타 자료 등을 수집·조사하는 것

[이야기]+[내용(양손 모두 아래로)], +[증거]+[대조하는 동작×2회(아래로 내리며)]+[조사]



영상보기
(I-6-1-4)



▶ 소의 취하간주(쌍불취하)

쌍방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고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보아 소송을 종결하는 것

[재판]+[포기](?:비수지), +[생각]+[가지다]+[결정]



영상보기
(I-6-1-5)





2) 기일의 해태

▶ 민사절차 설명



영상보기
(1-6-2)

한쪽 당사자가 서면 제출 후 기일해태를 한 경우, 서면에 기재한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봅니다(진술간주). 이때 출석한 당사자는 이에 대해 변론을 할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

[원(지문자)+그], +[피(지문자)+그]

[출석(양손 5지 수형, 동시에 밖에서 몸 안쪽으로)]+[변론(시비)]+[맞다]

[출석(한손 5지 수형, 몸 안쪽으로)]+[하나만]

[그(반대편 공간 지시)]+[결석], +[대신]+[서류]+[재판]

반면 한쪽 당사자가 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채 기일해태를 하는 경우, 출석하여 변론하는 당사자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봅니다(자백간주).

[그(결석자)]+[서류]+[없다]

[출석(한손 5지 수형, 몸 안쪽으로)]+[그]+[이야기]+[따라]+[정하다]

쌍방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고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취하간주).

[둘이]+[결석]×2+[1]+[2]

[재판]+[날짜]+[신청]+[없다]+[묵히다(네 손가락 끝 모으고 5지 끝을 1지 끝에 댄 오른손 끝을 코 옆 볼에 댄다.)]

[한 달]+[활동]+[아니하다?]

[재판]+[장]+[돌이]+[포기]+[생각]+[가지다]+[정하다]

[재판]+[끝]

▶ 관련 용어

▶ 기일해태

당사자나 대리인이 기일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않는 것

[재판]+[날]+[활동]+[아니하다]



영상보기 (I-6-2-1)



3) 기일의 진행

▶ 민사절차 설명

변론기일은 재판장이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불러 출석을 확인하는 것으로 개시됩니다.

[변론기일]

[사건]+[번호]

[원(지문자)+그]+[이름]

[피(지문자)+그]+[이름]

[오다]+[오다]+[확인]+[다음]



영상보기 (I-6-3)

당사자는 재판장의 지휘에 따라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에 기재한 사항을 진술합니다.

[소장(제기+네모)],+[다음]

[답변서(대답+네모)],+[다음]

[준비]+[서류]+[이야기]

[이야기]+[순서]

[재판]+[장]

[지시(공간 지시)]+(지시된 공간에서)[이야기]

[지시(반대편 공간 지시)]+(지시된 공간에서)[이야기]

당사자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자백, 침묵, 부지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진술이 끝나면 증거신청을 하고 증거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대답]+[종류(왼손바닥 위에 오른손 손날로)]+[4]

[첫째]+[부인(지문자)],+[아니다]+[~적 없다]

[둘째]+[자백(지문자)],+[그(상대방 공간 지시)]+[내용(한손만 내림)]+[인정]

[셋째]+[침묵(지문자)],+[대답]+[아니하다]

[넷째]+[부지(지문자)],+[모른다]+[들은 적 없다(오른손 손끝을 귀 가까이에, 손등이 위로, 상하로 흔든다.)]

[이야기]+[끝]+[후]

[증거(확인)]+[리스트/(리스트+가리키는 동작)]+[신청]

[조사]+[시작]

재판장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하거나 증명을 하도록 촉구(석명)할 수 있으며, 석명준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의 변론진행과정은 변론조서에 기록됩니다.

[재판]+[장]

[원(지문자)+그]+[피(지문자)+그],+[이야기]+[불분명하다]

[더]+[질문]+[할 수 있다]

[증거]+[서류]+[제출(받다)]+[명령(시키다)]+[할 수 있다]

[이야기]+[내용(한손만 내림)]

[모두]+[기록]+[기록/두다]

변론이 마무리되면 재판장은 다음 기일(속행 기일)을 지정합니다.

[변론]+[끝]+[때]

[재판]+[장]+[다음]+[재판]+[날짜]+[정하다]+[선언]

그러나 감정·검증 결과나 사실조회회신을 받아야 하는 등 다음 기일을 명확하게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기일을 추정(추후지정) 할 수 있습니다. 변론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변론을 종결하고(변론종결),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감정(가치+평가)]+[검증(확인+조사)]+[결과]+[나타나다]+[언제]+[불분명]+[때]

[며칠 후]+[다음]+[재판]+[날짜]+[정하다]+[보내다(우편)]

[변론]+[완료]+[때]

[재판]+[장], +[변론]+[완료]+[선언], +[다음]

[재판]+[결과]+[날짜]+[정하다]+[발표]

다만 변론종결이 되었더라도 심리가 미진하였거나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드러나는 등 변론을 재개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변론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변론재개를 원하는 당사자는 변론재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변론]+[완료]+[선언]+[이후]

[이야기]+[내용(한손만 내림)]+[맛+아직]+[때]

[변론]+[다시]+[신청]+[할 수 있다]

[새롭다]+[증거]+[나타나다]+[때]

[변론]+[다시]+[신청]+[할 수 있다]

재판장:

2021가합1234 00000 사건의 원고 홍길동씨, 원고 대리인 홍순영 변호사, 피고 김갑돌씨 출석하셨습니까?

[사건번호]+[2021가합1234]
[원(지문자)+그]+[이름]+[홍길동]
[그]+[대신]+[사람]+[홍순영]+[변호사]
[피(지문자)+그]+[김갑돌]+[오다]+[끝]?

원고 대리인:

원고 대리인 출석하였습니다. 원고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원(지문자)+그]+[오다]+[없다]
[그]+[대신]+[나]+[손드는 동작]

피고:

출석하였습니다.

[나]+[손드는 동작]

재판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어떤 청구를 하고 있고, 왜 그런 청구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지문자)]+[당신]+[제기]+[내용(한손만 내림)]+[무엇]
[원하다]+[목적]+[무엇]
[동기]+[왜]+[이야기]+[이야기하라는 손짓]

원고 대리인:

원고는 피고에게 00000을 청구합니다. 청구 이유는 ...입니다.

[원(지문자)+그]+[피(지문자)+그]+[돈+얼마]+[돈 받다(왼손바닥 위에)]+[원하다]+[신청]

[동기]+[왜]+[이야기](길게)

재판장: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답변하십시오.

[원(지문자)+그]+[원하다]+[내용(한손만 내림)]+[이것]

[피(지문자)]+[당신]

[대답]+[이야기]+[이야기하라는 손짓]

피고:

...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야기](길게)+[내용(한손만)]+[이]+[때문]

[나]+[돈 주다(원고 방향으로)]+[필요 없다]

재판장:

원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시겠습니까?

[원고를 부르는 손짓]+[당신]

[피(지문자)]+[그(피고의 공간 가리킴)]+[내용(한손만 내림)]+[이의]+[있다]?

[이야기]+[이야기하라는 손짓]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시 반박하시겠습니까?

[피고를 부르는 손짓]+[당신]

[원(지문자)]+[그(원고의 공간 가리킴)]+[내용(한손만 내림)]+[이의]+[있다]?

[이야기]+[이야기하라는 손짓]

양측은 더 주장하실 것이 있나요?

이제 주장에 대한 정리를 마치고 증거신청을 받겠습니다.

원고는 증거신청 하십시오.

[더]+[이야기]+[있다]?+[당신(원고와 피고, 번갈아)]?

[없다]?

[원고와 피고 방향을 각각 손으로 가리킴(손바닥이 위로)]+[이야기]+[끝]

[증거]+[신청 받다]+[시작]

[당신(원고)]+[증거]+[신청 받다]+[부탁]

원고 대리인:

...을 증명하기 위해 김길동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원(지문자)+그]+[내용/(한손만 내림+이것)]+[증인]+[김길동]+[부르다]+[신청]

재판장:

원고가 신청한 증인을 채택합니다.

피고도 증거신청 하십시오.

[증인]+[신청 받다]+[인정]

[다음]

[당신(피고)]+[증거]+[신청 받다]+[부탁]

피고:

...을 증명하기 위해 이갑순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증인]+[이갑순]+[부르다]+[신청]

재판장:

피고가 신청한 증인을 채택합니다.

양측은 더 신청할 증거가 있으신가요?

이것으로 증거신청 절차를 마칩니다.

[증인]+[그(피고 방향 공간 지시)]+[인정]

[당신+당신(원고와 피고 각각을 향해)]

[증거]+[신청 받다]+[더]+[있다]?+[당신+당신(원고와 피고 각각을 향해)]?

[없다]?

[증거]+[신청 받다]+[끝]

다음 기일은 6월 23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이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일을 마칩니다.

[다음]+[재판]+[6월 23일]+[2시]+[정하다]

[그날]+[증인]+[부르다]+[질문]X2회+[있다]

[오늘]+[재판]+[끝]



▶ 부인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하는 것

‘부인’은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가 답변을 할 때,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적 없다], [아니다], [그(지시)]+거짓 등으로 답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재판과정에서 ‘부인’이라는 말을 수어로 표현할 때는 해당 재판에서 농인 당사자가 사용한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며, 불분명한 표현에 대해 ‘부인’임을 질문해야 할 때는 [아니다], [~적 없다], [거짓] 수어를 의문형 비수지신호와 함께 사용합니다.

QR코드로 ‘부인’에 대한 수어 설명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보기
(I-6-3-1)

▶ 자백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

‘자백’은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가 답변을 할 때,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같다]는 수어를 사용하거나 [인정] 등을 사용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재판과정에서 ‘자백’이라는 말을 수어로 표현할 때는 해당 재판에서 농인 당사자가 사용한 표현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불분명한 표현에 대해 ‘자백’임을 질문해야 할 때는 [인정]이나 [같다] 수어를 의문형 비수지신호와 함께 사용하는데, [같다] 수어를 사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양손을 상대방과 답변하는 당사자 위치에서 표현합니다.

QR코드로 ‘자백’에 대한 수어 설명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보기
(I-6-3-2)

▶ 침묵

대답을 하지 않는 것. 자백으로 간주된다.

‘침묵’은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가 답변을 할 때,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대답]+[아니하다], [침묵] 등의 수어를 직접 사용하여 답변을 거부하거나, 수어나 구어, 필답 등을 사용하지 않으며 어떤 답변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대답]+[아니하다], [침묵] 등의 수어를 사용하거나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인



영상보기
(I-6-3-3)

정), [같다] 등의 수어 답변과 같은 '자백'으로 간주됩니다. 때문에 답변에 대한 거부 표현이 아닌 비언어적 표현으로 고개를 가로젓는 등의 표현이 수어 없이 나타날 때는 정확한 의사를 되물어야 합니다.

QR코드로 '침묵'에 대한 수어 설명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지

모른다(알지 못한다)고 답변하는 것. 부인으로 추정(가정)된다.

'부지'는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가 답변을 할 때,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모른다], [들은 적 없다], [본 적 없다] 등으로 답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같은 답변은 [~적 없다], [아니다]와 같이 '부인'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때문에 농인 당사자가 다른 표현 없이 [모른다] 수어만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수어통역사의 통역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등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모르겠다고 표현한 것인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답변으로 모른다는 표현을 한 것인지 구분하여야 합니다.

QR코드로 '부지'에 대한 수어 설명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보기
(I-6-3-4)

4) 서증 인부



민사절차 설명

서증이 제출되면 법원에서는 상대방에게 문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대해 답변하도록 합니다(서증 인부). 이때 성립인정, 부인, 부지 중 하나로 답변합니다. 그리고 문서의 진정성립은 인정하지만 문서가 작성된 경위 등 입증취지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성립인정, 입증취지 부인이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양손 도장 찍는 동작]+[네모]+[여러 가지]+[법원]+[제출]+[후]

[당신]+[타이핑 내리는 동작]+[같다]?+[질문]

[이때]+[대답]+[3]

[첫째], +[인정]

[둘째], +[~적 없다]

[셋째], +[본 적 없다(1, 5지 끝을 붙여 5지 등을 눈 아래에 댔다가 털어내는 동작)]



영상보기
(I-6-4)

[이외]+[대답]+[무엇]?

[타이핑 내리는 동작]+[나]+[같다]

[원하다]+[목적]+[다르다]

상대방이 문서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경우 문서를 제출한 사람(문서제출자)이 문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해야 합니다.

[서류]+[제출]

(제출자의 상대방)[그]+[저(제출된 서류 위치)]+[동의]+[~적 없다], +[저]+[서류]+[거짓]

(중립공간)[이]+[때]

[서류]+[더]+[증거(확인)]+[확실]+[굵어모으다]+[책임]+[누구]?

[서류]+[제출]+[그(문서제출자)]+[책임]

그러나 공문서나 작성명의인의 인장(도장)에 의한 인영이 찍혀있는 사문서 등은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문서제출자가 아니라 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서류]+[도장]+[있다]

[그러나]

(제출자의 상대방)[그]+[도장]+[~적 없다]

(제출자의 서류 위치)[그]+[서류]+[거짓]

(중립공간)[이]+[때]

[도장]+[~적 없다]+[증거(확인)]+[굵어모으다]+[책임]+[누구]?

[~적 없다]+(제출자의 상대방)[그]+[책임]

▶ 작성명의인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람. 실제로 문서를 작성한 사람(작성자)과 다를 수 있다.

[타이핑 내리는 동작]+[누구(문장에 따라 대상 넣을 수 있음)]+[이름]



영상보기
(I-6-4-1)

▶ 진정성립

문서가 그 문서의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 즉 위조(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로 문서를 만드는 것)되거나 변조(이미 만들어진 타인 명의 문서의 내용을 권한 없이 고치는 것)되지 않은 것

‘진정성립’은 용어에 대한 한글 설명을 그대로 번역할 경우 인정한다는 수어 표현을 넣지 않아도 성립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번역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판과정에서는 작성명의인에게 [서류] [내용]이 [그]의 [생각]과 [같다], 혹은 [아니다]로 묻게 됩니다. 당사자 농인의 제1언어가 수어인 경우에는 문자언어로 작성된 [서류] 내용에 대해서 [그]+[생각]+[본뜨다]+[타이핑하는 동작]+[같다] 등의 수어를 사용하여 인정 여부를 묻습니다.

QR코드로 ‘진정성립’에 대한 수어 설명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보기
(I-6-4-2)

▶ 공문서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

① [정부]+[문서]



영상보기
(I-6-4-3)



② [公]+[문서]



▶ 사문서

개인(사인)이 작성한 문서

[개인]+[문서]



영상보기
(I-6-4-4)



▶ 인영

문서에 찍힌 도장의 모양

[도장]+[모양]



영상보기
(I-6-4-5)



5) 증거조사

민사절차 설명



영상보기
(1-6-5)

증거조사는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실시하지만 검증물에 대한 증거조사는 검증물이 있는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방법]

[변론]+[날]

[재판]+[곳]+[안]+[조사]+[기본]

[그러나], +[증거]+[물건]+[곳]+[조사]+[때]

[방문(오른손 1지로 들어가는 동작)]+[조사]

증거조사를 할 때 당사자는 서증 인부, 법원에 도착한 감정이나 검증, 사실조회 결과에 대한 의견 진술 등을 하게 됩니다.

[증거]+[조사]+[때]

[감정(가치+평가)]+[결과]

[확인]+[조사]+[결과]+[나타나다]+[후]

[원(지문자)+그], +[피(지문자)+그]

[결과]+[서류]+[보다]+[인정]+[하다]+[말다]+[무엇], +[이야기]

증인신문 및 당사자신문을 통한 증거조사는 이를 위한 변론기일을 정한 후 해당 변론기일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당사자신문은 증인신문 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릅니다.

[증인]+[부르다]+[질문]+[질문]+[언제]?
[증거]+[조사]+[날]+[따로]+[언제]+[정하다]
[그]+[날]+[집중]+[조사]

6) 증인신문



민사절차 설명



영상보기
(1-6-6)

증인신문 방식에는 증인진술서 제출, 증인신문사항 제출, 서면에 의한 증언의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증인]+[질문]+[질문]+[조사]+[방법]+[3]
[첫째], +[증인]+[이야기]+[내용(한손만 내림)]+[타이핑 내리는 동작]+[제출]
[둘째], +[증인]+[질문]+[무엇]+[내용]+[제출]
[셋째], +[증인]+[질문]+[답]+[타이핑 내리는 동작]+[내용]+[제출]

이 중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한 경우 법원은 이를 증인에게 송달하고 상대방에게도 교부하며 상대방은 반대신문사항을 서면으로 준비한 후 변론기일에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원(지문자)], +[증인]+[부르다]+[때]
[그(원)]+[증인]+[질문]+[무엇]+[내용(한손만 내림)]
[법원(재판+곳)]+[제출]
[법원(주어)]+[받다]+[내용(원손바닥 위에서)]+[복사]+[후]
[증인]+[보내다(우편, 증인 위치로)], +[그(반대편)]+[피(지문자)]+[보내다(우편, 피고 위치로)]
[그(피고)]+[준비]+[무엇]?
[증인]+[질문]+[질문]+[내용(한손만 내림)]+[준비]
[변론]+[날]+[때]+[가지고 오다]

재판장은 증인이 출석하면 신분증 등을 확인하여 본인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증인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과 위증의 벌에 대해 설명하고 선서를 하도록 합니다.

[재판]+[장]

[증인]+[오다]+[때]

[주민등록증]+[확인]+[얼굴]+[같다]+[확인]

[당신]+[대답]+[거부(쳐내는 동작)]+[권리]+[있다]+[알려주다]

[거짓]+[별]+[있다]+[알려주다]+[후]

[증인]+[선서]

증인신문은 증인신문신청을 한 당사자의 신문(주신문) → 상대방의 신문(반대신문) → 증인신문 신청을 한 당사자의 재신문(재주신문) → 상대방의 재신문(재반대신문)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증인]+[질문]+[순서]

[증인]+[신청]+[그(신청자)]+[먼저]

[그/(문다+다음+문다+다음+다음+다음)](‘다음’에서 번갈아)

재판장은 언제든지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신문의 순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재판]+[장]+[재량]

[질문]+[순서]+[순서/바꾸다(1, 2지 뒤집는 동작 아래로)]+[할 수 있다]

[재판]+[장]+[증인]+[그/(문다+문다)]+[할 수 있다]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등 직접 출석하기 어렵거나 법정에서 당사자와 대면하여 진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이용하여 증인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증인]+[집]+[멀다(한손, ㄴ수형)]

[오다]+[어렵다]

[대신]+[영상(양손 카메라 수형, 마주)]+[할 수 있다]

[얼굴]+[마주보다]+[아니하다(양손)]+[같등]

[대신]+[영상(양손 카메라 수형, 마주)]+[할 수 있다]

증인은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출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신고하여

야 합니다.

[증인]+[질문]+[날]

[증인]+[오다]+[결석]?

[미리], +[결석]+[왜]+[이유]+[타이핑 내리는 동작]+[법원(재판+곳)]+[받다(법원 주어)]+[꼭]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증인을 구인하도록 명하거나 감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 주어)

[증인], +[결석]+[왜]+[이유]+[타이핑 내리는 동작]+[받다]+[없다]

[오다]+[결석]+[때]

[재판]+[장]+[3(옆으로)]

[첫째], +[벌금]+[500만원]+[선언]+[할 수+있다]

[둘째], +[시키다]+[증인]+[재판]+[곳]+[잡아 오다]+[할 수+있다]

[셋째], +[임시]+[잡아오다]+[가두다]+[할 수+있다]

[재판]+[장]+[3(옆으로)]/위 아래로 가리키는 동작]+[할 수+있다]

증인신문 과정은 모두 녹음되며, 증인신문조서에 기록됩니다.

[증인]+[질문]+[내용(양손 동시에 내림)]+[모두]+[녹음(원손바닥 위에 오른손 손끝이 위로, 내리면서 손 끝을 모은다)×2회]+[기록/(기록+두다)]

재판장:

지금부터 증인신문을 하겠습니다. 증인들은 증인석에 서 주시고, 신분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지금]+[부터]+[증인]+[질문]+[시작]

[증인]+[일어서다]+[주민등록증]+[보여 주세요]

증인은 증언으로 인하여 증인 본인 또는 증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나, 증인이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당신]

[이야기]+[밀어내는 동작]+[권리]+[조건]+[무엇]

[첫째], +[말하다]+[나]+[별]+[있다]

[말하다]+[아니하다], +[침묵(‘고’수형, 입에)]+[되다]

[둘째], +[말하다]+[가족]+[친척]+[별]+[있다]

[말하다]+[아니하다], +[침묵(‘고’수형, 입에)]+[되다]

[셋째], +[일]+[다른+사람]+[비밀]+[꺾꿨다]+[내용(한손만 내림)]

[말하다]+[아니하다], +[침묵(‘고’수형, 입에)]+[되다]

증인은 기억에 따라 진실만을 말해 주십시오. 만일 선서한 다음 증언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증인]+[당신]

[기억]+[대로]+[솔직하다]+[나에게 말하다]+[부탁]

[선서]+[끝]+[이후]

[이야기]+[거짓]+[확실하다]+[별]+[있다]

이제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은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서를 낭독해 주십시오.

[선서]+[시작]

[증인],+[팔]+[손드는 동작]+[후]

[선서]+[내용(한손만 내림)]+[읽다]+[수어]+[부탁]

증인(선서):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양심(옆구리)]+[대로]+[내용(한손만 내림)]+[전하다(양손 펴서 위 아래로 손바닥이 마주한 상태로 내민다)]

[스스로+보태다]+[아니하다]

[빼다(왼손바닥 위에서 오른손으로 집어 빼내는 동작)]+[아니하다]

[솔직하다]+[이야기]

[거짓]+[발각]

[벌]+[받아들이다]

[선서]

재판장:

원고 측 신문하십시오.

[원(지문자)+그],+[문다(증인 방향으로)]+[부탁]

피고 측 반대신문 하십시오.

[피(지문자)+그],+[문다(증인 방향으로)]+[부탁]

원고 측 재주신문 사항 있습니까?

[원(지문자)+그],+[더]+[묻다]+[있다]?

이상으로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증인신문 결과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증인]+[묻다]+[묻다]+[모두+끝]

[원(지문자)+그]+[피(지문자)+그]

[더]+[이야기]+[원하다]?

이것으로 증거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증거]+[조사]+[끝]+[선언]

▶ **관련 용어**

▶ **구인**

법정으로 데리고 오는 것

[시키다]+[잡아 데리고 오는 동작(주먹 수형)]



영상보기
(I-6-6-1)



▶ 감치

판사의 명령에 의하여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일정한 기간 동안 가두어두는 것

[임시]+[잡아오다]+[가두다]



영상보기
(1-6-6-2)

7) 당사자신문



민사절차 설명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신문(지문자)]+[무엇?]

[원(지문자)+그]+[피(지문자)+그], +[양쪽을 가리키는 동작]

[증인]+[자리]+[앉다]+[이야기]+[이것]

[재판]+[장]+[재량]+[지시]+[앉다]+[이야기]+[할 수 있다]

[원(지문자)+그]+[피(지문자)+그]+[신청]+[증인]+[자리]+[앉다]+[이야기]+[할 수 있다]



영상보기
(1-6-7)

당사자신문은 증인신문의 절차를 대부분 따르므로 당사자가 선서를 한 후 신문이 시작됩니다.

[당사자신문(지문자)]+[절차]

(공간 구분) [증인]+[질문]+[절차]

[이것(당사자신문절차)]+[저것(증인신문 절차)]+[갈대]

[증인]+[자리]+[서다]+[선서]+[끝]+[후]+[질문]+[대답]+[이야기]+[시작]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혹은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신문사항

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이 진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증인]+[자리]+[앉다]+[이야기]+[명령(시키다)]+[후]

[이야기]+[날]

[첫째], +[그(공간 지시)]+[오다]+[결석]

[재판]+[장]+[그(상대방)]+[내용(한손만 내림)]+[인정]+[주다]

[둘째], +[그(공간 지시)]+[선서]+[거부]

[재판]+[장]+[그(상대방)]+[내용]+[인정]+[주다]

[셋째], +[그(공간 지시)]+[이야기]+[거부(밀어내는 동작)]

[재판]+[장]+[그(상대방)]+[내용]+[인정]+[주다]

당사자가 선서한 후 거짓 진술을 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선서]+[끝]+[후]

[이야기]+[거짓]+[확실하다]+[때]

[재판]+[장]

[벌금]+[500만]+[선언]+[할 수+있다]

7. 판결선고 및 상소

1) 소송의 종결



민사절차 설명



영상보기
(1-7-1)

소송은 법원의 판결(종국판결), 원고의 청구 포기, 피고의 청구 인낙, 소송상화해, 민사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을 통해 종결됩니다. 청구의 포기·인낙조서, 화해조서,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판]+[끝]+[방법]

[첫째], +[재판]+[장]+[재판]+[끝]+[선언]

[둘째], +[원(지문자)+그]+[재판]+[진행], +[포기]

[셋째], +[피(지문자)+그], +[원(지문자)+그]+[내용(한손만 내림)]+[맞다(같다+같다)]+[인정]
[넷째], +[재판]+[절차]+[중]+[합의]+[해결]
[다섯째], +[말싸움]+[조정]
[여섯째], +[재판]+[장]+[비율(양손 1, 5지만 펴서 1지만 엇갈리게 위 아래로)]+[재량]+[정하다]+[서류]+[합의]+[양손 도장 찍는 동작]+[완료]
[재판]+[끝]+[마찬가지]

법원은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는데 화해권고결정서 정보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쌍방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소송이 종결됩니다.

[화해권고결정(지문자)+[무엇]?
[법원]+[재량]
[비율]+[얼마]+[정하다]+[보내다(우편, 양쪽에)]
[14일]+[동안]
[이의]+[신청 받다]+[없다(원고 위치 향해)]?+[없다(피고 위치 향해)]?+[때]
[재판]+[끝]

법원은 민사조정 과정에서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등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말싸움+조정)]+[중]
[조정]+[안 되다]+[때]
[재판]+[장]+[비율]+[재량]+[정하다]+[할 수+있다]

이때에도 결정서 정보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소송이 종결됩니다.

[재량]+[정하다]+[보내다(우편, 원고와 피고 양쪽에)]
[14일]+[동안]
[이의]+[신청 받다]+[없다(원고 위치 향해)]?+[없다(피고 위치 향해)]?+[때]

[재판]+[끝]

원고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는데 이때에도 취하된 부분의 소송이 종결됩니다.

[원(지문자)+그]+[제기]+[내용(한손만 내림)]+[모두]+[취소]+[할 수+있다]

[일부]+[취소]+[할 수+있다]

[모두]+[취소]+[때], +[재판]+[끝]

[일부]+[취소]+[때]

[일부/(일부+빼내어 버리는 동작)]+[재판]+[진행]

▶ 관련 용어

▶ 청구 포기

원고가 스스로 자신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

[제기], +[재판]+[진행], +[포기]



영상보기 (I-7-1-1)



▶ 청구 인낙

피고가 스스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것

[원(지문자)+그]+[제기(원고에서 법원 방향으로)]+[내용(양손 내림)]+[수용(네 손가락의 끝을 모으고 5지 끝을 1지 끝에 붙여 눈 아래 볼에 댄다)]+[인정]



영상보기 (I-7-1-2)



▶ 소송상화해

소송 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것

[재판]+[절차]+[중]+[합의]+[해결]



영상보기
(I-7-1-3)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

조정기일에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의 경우에 분쟁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법원에서 조정안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보내는 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당사자 사이의 [(말)다툼]이 합의되지 않는([합의+안 되다]) 경우 법원에서 조정안을 정하여 알리는 것으로, 이때 법원은 장소의 의미가 아니므로 [재판] 수어로, 그리고 [결정]에는 [재량] 수어를 같이 사용하여 법원의 조정 결정임을 표현합니다. [헤아리다]+[비율] 등의 수어로 조정안을 표현할 수 있으며, 결정을 알리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보내다(우편)] 수어를 양쪽 당사자에게 사용하되 실제 사례에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수어로 표현합니다.

QR코드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수어 설명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보기
(I-7-1-4)

▶ 화해권고결정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재판부가 당사자에게 화해를 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은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재판부가 화해를 권하는 결정이므로 [재판] 수어를 [(말)다툼] 앞에 넣어 소송이 진행 중임을 표현합니다. [합의+안 되다], +[재판]+[결정]+[재량], +[헤아리다]+[비율] 등의 수어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사용한 것과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며,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나타내다] 수어를 양쪽으로 보여주면서 비수지신호를 같이 사용합니다. [이의] 여부에 따라 [재판]이 [계속]될 수 있음을 덧붙여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임을 나타냅니다.

QR코드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수어 설명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보기
(I-7-1-5)

2) 판결

▶ 민사절차 설명

판결은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즉 재판의 결과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종국판결을 말합니다.



영상보기
(I-7-2)

[판결(지문자)]+[무엇]?

[재판]+[끝], +[선언]

종국판결은 각하판결(소송판결)과 인용판결(원고 승소 판결), 기각판결(원고 패소 판결)로 구분되며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을 인정하는 일부인용판결(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재판]+[선언]+[4(옆으로)]

[4/첫째], +[제기]+[부족]+[쳐내는 동작]+[선언]

[4/둘째], +[원(지문자)+그]+[이기다(손끝을 붙여 오므렸다 위로 올리며 펴는 동작)]+[선언]

[4/셋째], +[피(지문자)+그]+[이기다]+[선언]

[4/넷째], +[원(지문자)+그]+[일부]+[이기다]+[선언]

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경우 법원은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재판]+[1차]+[2차]+[3차]

[재판]+[모두]+[끝]+[후]

[명령]+[선언]

[재산]+[관계]+[재판]

[1차]+[재판]+[끝]+[후]

[가집행선고(지문자)]+[이것]+[임시]+[명령]+[선언]

[재산]+[(재산 수형 그대로)받다]+[할 수 있다]

OO지방법원
제00민사부
판결

사 건 2021가합0000 0000
원 고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 고 000
변론종결 2021. 00. 00.
판결선고 2021. 00. 0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00. 0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3. 판단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000 _____ (인)
판사 000 _____ (인)
판사 000 _____ (인)

▶ **종국판결**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절차에서 끝내는 판결

[재판]+[끝], +[선언]



영상보기
(I-7-2-1)



▶ **각하판결(소송판결)**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데 필요한 법에 정해진 요건(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원고의 청구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소 제기 자체를 배척하는 판결

[부족]+[쳐내는 동작]+[선언]



영상보기
(I-7-2-2)



▶ **인용판결**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판결. 원고 승소 판결

(주어 법원)[제기 받다]+(원고 위치)[이기다(손끝을 붙여 오므렸다 위로 올리며 펴는 동작)]+[선언]



영상보기
(I-7-2-3)



▶ 기각판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 원고 패소 판결(피고 승소 판결)

[제기]+[지대]+[선언 받다]



영상보기
(1-7-2-4)



▶ 가집행선고

상소기간이 끝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도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법원의 선언. 가집행선고는 판결 주문에 포함된다.

[임시]+[명령(시키다)]+[선언]



영상보기
(1-7-2-5)



3) 판결의 선고 및 확정



민사절차 설명



영상보기
(1-7-3)

판결은 판결선고기일에 재판장이 판결원본의 판결주문을 읽어 선고하며 재판장은 필요한 경우 판결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재판]+[끝]+[선언]+[절차]

[재판]+[선언]+[날]

[재판]+[장]+[결정]+[내용(한손만 내림)]+[있다]+[이야기]

[그러나]

[정하다]+[왜]+[이유]

[이야기]+[있다]+[없다]+[두 가지(1, 2지를 전후로 엇갈리게)]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 수 있고 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재판]+[끝]+[선언]+[때]

[원(지문자)+그]+[피(지문자)+그]+[양쪽을 가리키는 동작]

[오다]+[결석]+[관계없다]+[선언]

당사자에게는 판결선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판결서 정본을 송달합니다.

[재판]+[장]

[선고]+[후]

[14일]+[동안]+[이내(안)]

[선언]+[서류]+[보내다(우편, 원고와 피고 양쪽에)]

만약 판결에 명백하게 잘못된 기재나 계산 등이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혹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선언]+[서류]+[글자]+[숫자(번호)]+[실수]+[틀리다]+[때]

[서류]+[수정(왼손바닥에 오른손 1, 2지를 뒤집는 동작)]+[선언]+[할 수+있다]

당사자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2주 이내에 상소하지 않는 경우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다시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원(지문자)+그]+[피(지문자)+그]+둘이

[재판]+[선언 받다]+[서류]+[받다]

[14일]+[동안]

[이의]+[제기]+[없다]?

[재판]+[모두]+[끝]

[다시]+[소송]+[할 수 없다(불가능)]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지문자)+그]+[피(지문자)+그]+[둘이]

[조정]+[합의]+[서류]+[양손 도장 찍는 동작]]+[완료]

[재판]+[끝]+[마찬가지]

🔍 판결선고기일 예시

재판장:

2021가합0000 OOOOO 사건의 판결을 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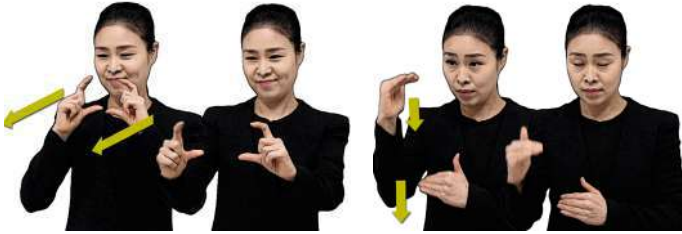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심 판결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판결주문

재판의 결과, 판결의 결론

[선언]+[내용(양손 내림)]



영상보기
(1-7-3-1)

▶ 판결이유

판단의 기초가 된 확정된 사실관계와 이에 대한 법률적 판단 등 판단의 경위

[선언]+[이유]+[동기]



영상보기
(1-7-3-2)

▶ 판결경정

판결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법원이 판결을 정정하거나 보충하는 것. 판결의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선언]+[수정(왼손바닥에 오른손 1, 2지 뒤집는 동작)]



영상보기
(1-7-3-3)



▶ 기판력

확정된 중국판결 등이 가지는 효력으로 당사자는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법원도 다시 심사하여 확정된 중국판결 등과 어긋나거나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효력



영상보기
(I-7-3-4)

[선언], +[되돌릴 수 없음(약속+손바닥을 상하로 맞부딪히는 동작)]



4) 상소



민사절차 설명

상소란 미확정인 재판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으로 항소와 상고를 말합니다.



영상보기
(I-7-4)

[상소(지문자)]+[무엇]?

[재판]+[선언 받다]+[불순종]+[이의]+[제기]+[이것]

[종류]+[2(왼손 1, 2지 사이에 오른손바닥 끼운다)]

[2/첫째]+[항소(지문자)]

[2/둘째]+[상고(지문자)]

[항소(지문자)]+[무엇]?

[1차]+[지방]+[법원(재판)]+[선언 받다]+[불순종]

[2차]+[고등]+[법원]+[이의]+[제기]+[이것]

[상고(지문자)]+[무엇]?

[2차]+[고등]+[법원]+[선언 받다]+[불순종]

[3차]+[크다]+[법원]+[이의]+[제기]+[이것]

항소심에서는 1심의 사실관계 확정과 법률적 판단 모두에 대해 다룰 수 있습니다.

[1차]+[재판]+[선언]

(공간 구분)[2차]+[재판]+[선언]

[양쪽을 가리키는 동작]

[다르다(양손 1, 5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며 서로 반대로 뒤집는 동작)]+[할 수+있다]

그러나 상고심에서는 상고 이유가 법령위반으로 제한되므로 사실관계 확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상고한 경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1차]+[재판]+[2차]+[재판]+[때], +[2(옆으로)]

[2/첫째], +[원(지문자)+그]+[피(지문자)+그]+[내용]+[맞다]+[아니다]

[2/둘째], +[관계]+[법]+[왼손바닥을 가리키는 동작]+[무엇]

[2/왼손 1, 2지를 가리키는 동작]+[합하다(세로로)]+[선언]

[대법원]+[담당]+[무엇]?

[원(지문자)+그]+[피(지문자)+그]+[내용]+[맞다]+[아니다]+[이것]+[관계없다]

[대법원]+[그것]+[말다+아니다]+[쳐내는 동작]+[할 수+있다]

[법]+[왼손바닥을 가리키는 동작]+[일치하다(양손바닥 위로, 손날을 맞대는 동작)]+[있다]+[없다]+[재판]+[하나만]

1심을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재판한 사건의 항소심은 고등법원에서 심판합니다.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재판한 1심 사건은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심판합니다.

[1차]+[재판]+[지방]+[법원(재판)], +[재판]+[장]+[3(명)]+[때]

[다음]+[2차]+[재판]+[고등]+[법원(재판)]+[담당]

[1차]+[재판]+[지방]+[법원(재판)]+[재판]+[장]+[하나만]+[때]

[다음]+[2차]+[지방]+[법원(재판)]+[내(안)]+[이의]+[제기]+[곳]+[항소부(지문자)]+[담당]

상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판결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판]+[선언 받다]+[이의]+[제기]+[원하다]+[때]

[선언 받다]+[서류]+[받다]

[14일]+[동안]

[이의]+[서류]+[제출]+[필요]

[제출]+[곳]?

[재판]+[선언 받다]+[곳]+[제출]

▶ 관련 용어

▶ 항소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법원에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

[이의]+[제기(위쪽으로)]



영상보기
(1-7-4-1)



▶ 상고

항소법원의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

[대법원]+[제기(위쪽으로)]



영상보기
(I-7-4-2)

▶ 법령위반

법원이 재판을 할 때 적용해야 할 법률·명령·규칙 등을 적용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적용하는 것

[법]+[맞지 않다(양손바닥 위)]



영상보기
(I-7-4-3)

▶ 심리불속행

대법원에서 상고 대상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

[대법원]+[각하(거부당하다)]



영상보기
(I-7-4-4)



▶ 원심법원

항소심(2심)의 경우 1심 판결을 한 법원, 상고심(3심)의 경우 2심 판결을 한 법원

[이전]+[법원(재판+곳)]



영상보기
(I-7-4-5)



8. 판결확정 후 절차

1) 강제집행

▶ 민사절차 설명

인용판결을 받은 원고는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피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원(지문자)+그]+[재판]+[이기다]+[선언 받다]+[후]

[명령(시키다)]+[서류]+[가지다]

[피(지문자)+그]+[나타내다(피고 방향으로)]

[무조건(맹+하나만)]+[재산]+[빼앗다]+[할 수 있다]



영상보기
(I-8-1)

강제집행은 법원에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여 집행문을 받은 뒤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강제집행(지문자)]+[이것]+[절차]

[첫째],+[명령]+[서류]+[가지다]

[둘째],+[피(지문자)+그]+[재산]+[발강]+[딱지 붙이는 동작×2회]

[셋째],+[법원(재판)]+[피(지문자)+그]+[재산]+[빼앗다]+[팔다]

[다음]+[원(지문자)+그]+[그/돈 주다]

부동산 및 등기할 수 있는 선박, 자동차 등은 강제경매가 이루어지며, 채권은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강제집행합니다.

[땅]+[집]+[배]+[자동차]+[이것(원 그려 가리킴)]

[경매]+[팔다]+[후]+[돈 받다(원손바닥 위에)]

[돈]+[수표]+[여러 가지]+[이것들(원 그려 가리킴)]

[빼앗다]+[후]+[돈 받다]



관련 용어

▶ 강제집행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집행권원을 근거로 상대방의 협조 없이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만족을 얻는 것

[무조건(맹+하나만)]+[명령(시키다)]+[선언]



영상보기
(I-8-1-1)



▶ 집행권원

채무자에게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공적인 문서

'집행권원'을 수어로 설명할 때는 [재판]의 결과[선언(받다)]로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므로 채무자의 재산을 [집], [돈] 등으로 표현한 다음 [압류(빼앗다)]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수어로 표현하며, 이때 집행권원이 문서 형태임을 수형으로 나타냅니다.



영상보기
(I-8-1-2)

▶ 집행문

집행권원에 따른 집행력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집행권원 정보에 덧붙이는 문서 '집행문'은 집행권원 정보에 덧붙이는 문서로 표현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을 할 때 부여 받는 문서이므로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는 [명령(시키다)] 수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로 '집행권원과 집행문'에 대한 수어 설명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강제경매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 등을 압류한 후 매각(판매)하여 매각대금(판매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충당하게 하는 강제집행 절차

[강제]+[경매]+[명령]



영상보기
(I-8-1-3)

▶ 추심명령

제3채무자의 금전채권을 압류한 채권자(압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 변제를 받을 권리를 주는 법원의 결정



영상보기
(I-8-1-4)

(연속 동작에서 왼손 유지)

[빌려주다(1→2)]+[빌려주다(2→3)]+[돈 받다(1→2)]+[아직]+[강요(3에게)]+[돈 받다(3→1)]



▶ 전부명령

제3채무자의 금전채권을 압류한 채권자(압류채권자)가 지급받아야 하는 채권의 금액만큼 압류채권 자체를 이전시키는 법원의 결정



영상보기
(I-8-1-5)

[빌리다(1→2)]+[빌려주다(2→3)]+[권리]+[직접(1→3 법률용어 사전 수의 계약에서 첫 동작)]



2) 재산명시, 재산조회



민사절차 설명



영상보기
(I-8-2)

만약 강제집행을 할 재산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지문자)+그]

[피(지문자)+그]+[재산]+[찾다]+[안 되다]+[때]

[법원(재판+곳)]+[부탁]+[서류]+[신청]

[피(지문자)+그]+[재산]+[적어 넣다×2~3회]+[달라]+[신청]

재산명시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상황 및 재산이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재판+곳)],+[명령(피고에게 시키다)]

[그(피고)]

[전(과거)]+[재산]+[무엇]

[지금]+[재산]+[무엇]+[적어 넣다×2~3회]

[법원(재판+곳)]+[제출 받다]+[명령(시키다)]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할 수 없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제출한 재산이 채권에 비해 부족한 경우 등에는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지문자)]

[재산]+[확인]+[조사]+[신청]+[네모]+[이것]+[무엇]?

[첫째],+[피(지문자)+그]+[재산]+[적어 넣다×2~3회]+[네모]+[받다]+[아직]

[둘째],+[피(지문자)+그]+[재산]+[작다]+[돈 받다]+[부족]+[때]

[이]+[신청]+[네모]+[법원(재판+곳)]+[신청]

그리고 채무자가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기일에 불

출석하는 경우 등에는 법원에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록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모두]+[끝]+[후]

[6개월]+[동안]+[돈 받다]+[아직]

[그리고]

[피(지문자)+그]+[재산]+[적어 넣다×2~3회]+[제출(받다)+[날]+[오다]+[결석]+[때]

[변제(값아 나가다)]+[어기다×2회]+[사람]+[명단(이름+적어 넣다×여러 회)]+[있다]+[그것]

[피(지문자)+그]+[이름]+[적어 넣다]+[달라]+[신청]+[할 수+있다]

재산명시신청

채권자

채무자

집행권원의 표시

OO지방법원 20 . . . 선고 2021가합000 손해배상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보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 금 원

신청취지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

신청사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표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고 채무자는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61조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 | |
|----------------|----|
| 1. 집행력 있는 판결정보 | 1부 |
| 2. 송달증명원 | 1부 |
| 3. 확정증명원 | 1부 |
| 4. 송달료납부서 | 1부 |

20 . . .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OO지방법원 귀중

▶ 관련 용어

▶ 재산명시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기재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

[재산]+[적어 넣다×3회]+[제출]



영상보기
(I-8-2-1)



▶ 재산조회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자료를 보관·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알아보는 것

[재산]+[화면을 띄우는 동작]+[조사]



영상보기
(I-8-2-2)



3) 소송비용의 청구

▶ 민사절차 설명

소송비용은 인지액, 송달료, 변호사 비용, 증인 여비, 감정료 등을 말하는데 소송 절차 수행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이 모두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보기
(I-8-3)

[소송비용(지문자)]

[재판]+[제기]+[합하다(위 아래로 모으다)]+[돈], +[이것]+[무엇]?

[수고]+[우표(편지)]+[돈]

[서류]+[보내다]+[돈]

[변호사]+[수고]+[돈]

[증인]+[교통]+[돈]

[가치]+[평가]+[돈]

[이것들(원 그려 가리키는 동작+리스트)]+[합하다]+[돈]

[그러나]

[사용(수동 1회, 돈 수형을 펴면서)]+[돈]+[모두]+[인정]+[돈 받다], +[아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며 판결 선고 시에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판결 주문에 포함됩니다.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재판]+[제기]+[합하다(위 아래로 모으다)]+[돈]

[돈 내다(왼손바닥 밑으로 오른손 '돈' 수형 스쳐 내민다)]+[누구]?

[재판]+[지다]+[그(공간 지시)]+[말기다]

[재판]+[끝]+[선언]+[때]

[사용]+[돈]+[인정]+[무엇]+[적어 넣다×2~3회]+(왼손 유지)[있다]

[재판]+[제기]+[합하다(위 아래로 모으다)]+[돈]

[돈 받다]+[원하다]+[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지문자)]+[쓰다(글)]+[신청]

▶ 소송비용

소송절차를 수행하는데 소요된 전체 비용. 인지액, 송달료, 변호사 비용, 증인·감정인 등의 법정 출석 여비, 감정료 등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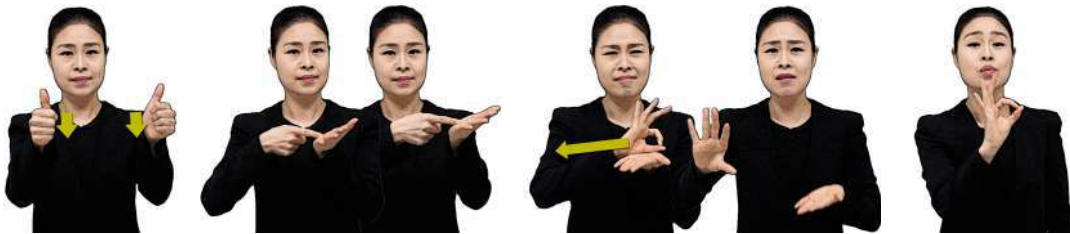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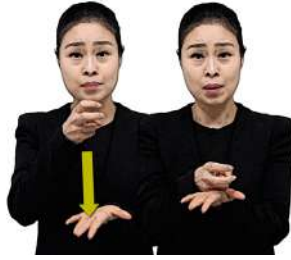
영상보기
(1-8-3-1)

① [재판]+[제기]+[합하다(위 아래로 모으다)]+[돈]



② [재판]+[제기]+[지출(수동 1회, 마지막에 손가락을 펴는 동작)]+[돈]





[법]



[계약]



[권리]



[변제(값아 나가다)]

1. 권리의 발생과 소멸



관련 용어

▶ 의사능력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잘 인식하고 판단하여 이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의사능력의 유무는 각 법률행위 별로 판단하며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사무능력자)의 행위는 무효이다.

[생각]



영상보기
(II-1-1)



▶ 행위능력

독자적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행위능력은 획일적으로 판단하며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사람을 제한능력자라고 한다. 제한능력자의 행위는 일정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영상보기
(II-1-2)

[법]+[활동]



▶ 무효

법률행위를 했지만 처음부터 효과가 없는 것.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고 또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을 말한다. 민법에 따른 무효사유로는 당사자의 의사 무능력, 강행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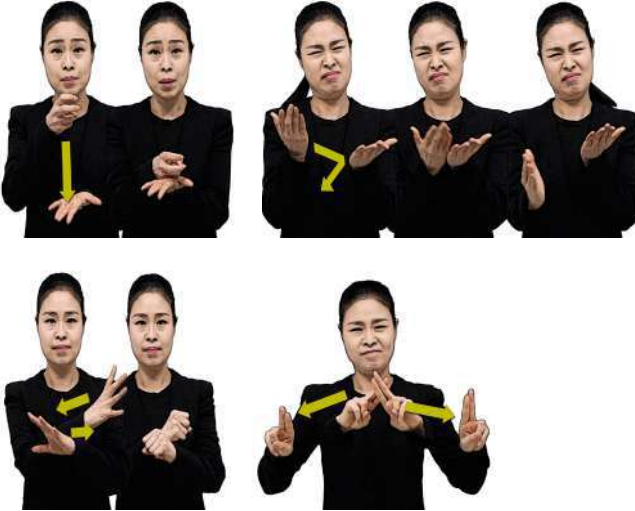
영상보기
(II-1-3)

① [법]+[맞지 않다]+[계약]+[찢다]





② [법]+[맞지 않다]+[계약]+[취소]



▶ 취소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를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무능력 등을 이유로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취소권자)이 취소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지 않는다.



영상보기
(II-1-4)

① [자격 없다]+[계약]+[찢다]



② [자격 없다]+[계약]+[취소]



▶ 철회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법률행위의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철회는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장래를 향해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취소와 다르다.



영상보기
(II-1-5)

① [시작]+[아직], +[계약]+[찢다]



② [시작]+[아직], +[계약]+[취소]



▶ 조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 여부에 따라 법률효과가 발생하거나 소멸하도록 한 경우에서의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



영상보기
(II-1-6)

[조건]



▶ 기한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따라 법률효과의 발생이나 소멸,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지도록 한 경우에서의 확실한 사실. 언제인지가 확실한 확정기한(예: 2022.1.1.)과 언제인지가 불확실한 불확정기한(예: 갑의 사망)이 있다.



영상보기
(II-1-7)

[언제]+[동안]



▶ 소멸시효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은 경우 권리가 소멸하는데 이때 권리가 소멸하는 기간. 소멸시효는 채권에 따라 1년, 3년, 5년 등으로 다른데 민법에 따른 일반적인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영상보기
(II-1-8)

[권리]+[언제]+[동안]



▶ 제척기간

특정한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 소멸시효와 달리 정지, 중단이 없고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권리가 소멸하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인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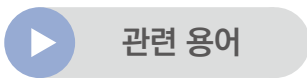
[무조건(맹+하나만)]+[언제]+[동안]



영상보기
(II-1-9)



2. 물건 관련



▶ 물건

현존하고 독립된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 물건은 재산권의 하나이다.

[물건]+[권리(능력)]



영상보기
(II-2-1)



▶ 부동산

토지와 그 정착물, 즉 땅과 땅에 고정되어 쉽게 움직일 수 없는 물건. 정착물에는 건물, 입목등기를 한 입목(땅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 등이 있다. 부동산과 그 권리관계는 부동산등기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상보기
(II-2-2)

① [땅]+[집]



②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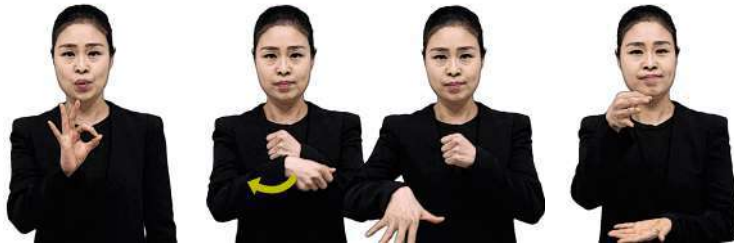
▶ 동산

부동산 외의 물건,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돈]+[종류]+[재산]



영상보기
(II-2-3)



▶ 점유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이 가지는 권리

[점거]+[사용]+[권리]



영상보기
(II-2-4)



▶ 소유권

물건을 가진 사람이 가지는 권리로 물건에 대한 전면적 권리. 소유권이 있는 사람(소유권자)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소유]+[권리]



영상보기
(II-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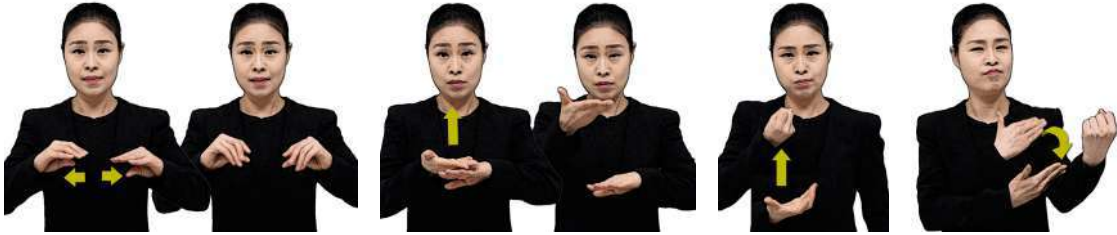
▶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공작물(지상이나 지하에 인공적으로 설치한 시설)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영상보기
(II-2-6)

[땅]+[위]+[소유]+[권리]



▶ 지역권

설정행위에서 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의 토지(요역지)를 위하여 이용하는 권리



영상보기
(II-2-7)

[땅]+[지역]+[사용]+[권리]



▶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하는 권리



영상보기
(II-2-8)

[전세]+[사용]+[권리]



▶ 유치권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무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는 권리



영상보기
(II-2-9)

[돈 받다]+[아직]+[물건]+[점유(왼손바닥 위에 오른손)]+[권리]



▶ 질권

채권자가 채무자나 제3자(당사자 이외의 사람)로부터 부동산 외의 물건이나 채권(질물)을 담보로 제공받고,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 그 질물을 처분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영상보기
(II-2-10)

[돈 받다]+[없다], +[물건]+[소유]+[권리]



▶ 저당권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 또는 등록 가능한 동산을 인도받지 않고 공부(부동산 등기부와 같은 공적 장부)에만 표시하여 담보물로 가지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면 담보물을 경매에 넘겨서 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권리



영상보기
(II-2-11)

[돈 받다]+[권리], +[집(상대방 공간)]+[오른손 1, 5지를 구부려 기입하는 동작(상대방 집)]

(QR코드 동영상에는 제시된 수어 표현 이후 용어에 대한 수어 해설이 이어집니다.)



3. 채권 관련



▶ 채권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인 물건과 구분된다.

[돈 받다(왼손바닥에)]+[권리]



영상보기
(II-3-1)

▶ 채권자

채권을 가진 사람

① [돈 받다(왼손바닥에)]+[권리]+[사람]



영상보기
(II-3-2)

② [빌려주다]+[사람]



▶ 채무

채권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의무

[변제(값아 나가다)]+[책임]



영상보기
(II-3-3)

▶ 채무자

채무를 가진 사람

① [변제(값아 나가다)]+[책임]+[사람]



영상보기
(II-3-4)

② [빌리다]+[사람]



▶ 연대채무

여러 명의 채무자가 채무의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중 1명이 채무를 이행하면 다른 채무자도 채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채무



영상보기
(II-3-5)

[공범]+[번제(값아 나가다)]+[책임]



▶ 보증채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채무



영상보기
(II-3-6)

[돈 받다(2→1)]+[약속 어기다]+[대신]+[보증(확인+서다)(공간3)]+[그/돈 받다(3→1)]+[말기다(공간3)]





▶ 약정이자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정한 이자

[계약]+[이자(이익+이자)]



영상보기
(II-3-7)



▶ 채무불이행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행위(이행, 급부, 급여, 지급)를 하지 않는 것.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변제(수동 1회)]+[어기다]



영상보기
(II-3-8)



▶ 변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실행하는 행위. 변제가 있으면 채권이 소멸한다.

[변제(수동 1회)]



영상보기
(II-3-9)

▶ 공탁

법령에 따라 금전, 유기증권, 기타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는 것

[법원(재판)+[돈]+[비상]+[두다(‘두겁다’ 수형, 법원 방향으로 내민다)]



영상보기
(II-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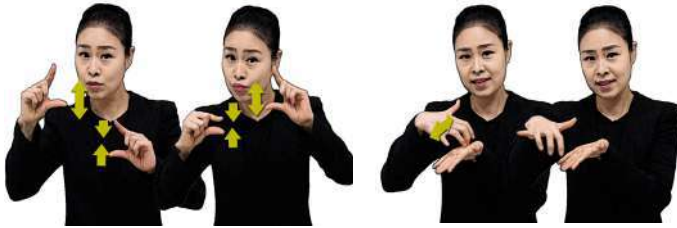
▶ 상계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를 갖는 경우에 채무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에 따라 서로 채권·채무를 같은 액수만큼 소멸시키는 것

① [빌리다]+[빌려주다]+[비율(양손 1, 5지만 펴서 1지를 상하로 엇갈리게 움직인다)]+[계산]



영상보기
(II-3-11)



② [빌리다]+[빌려주다]+[비율(양손 1, 5지만 펴서 1지를 상하로 엇갈리게 움직인다)]+[값다]



▶ 면제

채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것. 채권자가 채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면제(양손으로, 이마)]+[주다]



영상보기
(II-3-12)



▶ 계약

계약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간의 의사가 합치하여 권리·의무가 발생하거나 권리·의무를 변경하는 법률행위. 계약은 채권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영상보기
(II-3-13)

[계약]



▶ 해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는 계약(근로계약, 임대차계약 등)에서 사용되며 소급효가 없다는 점에서 해제와 다르다.



영상보기
(II-3-14)

[계약]+[사용]+[~다가]+[자르다]





▶ 해제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계약에서만 사용되며 법률행위의 하자과 관계없고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해제권자)만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소와 다르다.



영상보기
(II-3-15)

[계약]+[취소]+[되돌려놓다]+[돈 받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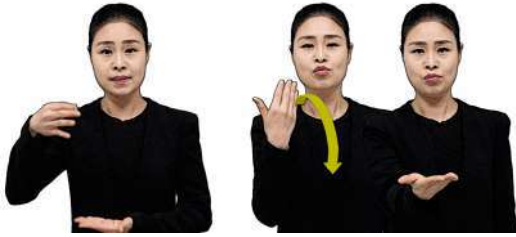
▶ 증여

증여자(증여를 하는 사람)가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무료로 자신의 재산을 주기로 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하여 성립하는 계약



영상보기
(II-3-16)

① [재산]+[주다]



② [재산]+[주다]+[계약]



▶ 계약금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 해약금이 라고도 하며 계약금을 준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그 상대방은 계약금의 배액(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영상보기
(II-3-17)

[계약]+[돈]



▶ 소비대차

대주(빌려주는 사람)가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차주(빌리는 사람)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차주는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한 계약. 금전 소비대차가 가장 대표적이다.



영상보기
(II-3-18)

① [돈]+[빌려주다], +[되돌리다]+[돈 받다]



② [물건]+[빌려주다], [되돌리다]+[물건]+[받다]



▶ 사용대차

대주가 차주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차주는 이를 사용·수익한 후 반환할 것을 약정한 계약



영상보기
(II-3-19)

① [집]+[빌려주다]+[무료]+[계약]



② [물건]+[빌려주다]+[무료]+[계약]



▶ 임대차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 목적물(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약정하고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차임(지료, 임대료, 월세 등)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



영상보기
(II-3-20)

① [집]+[빌려주다]+[돈 받다]+[계약]



② [물건]+[빌려주다]+[돈 받다]+[계약]



▶ 도급

수급인이 어떠한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

[일]+[지부]+[말기다]+[계약]



영상보기
(II-3-21)

▶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받고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

[수고 없다(왼팔에 오른손으로 집었다가 내려퍼는 동작)]+[이득(오른손 전체)]



영상보기
(II-3-22)

▶ 불법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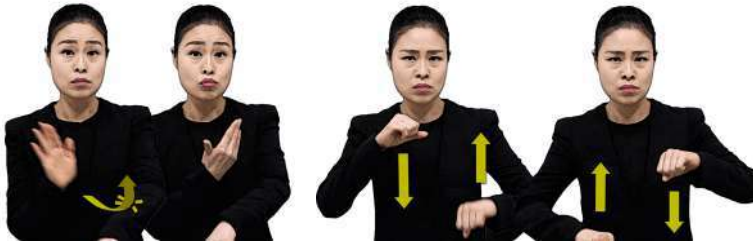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

① [잘못]+[누구]



영상보기
(II-3-23)

② [잘못]+[행동]



▶ 고의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행하는 것

[일부러(주먹)]+[행동]



영상보기
(II-3-24)

▶ 과실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지만 주의의무를 위반하여(부주의하여) 결과의 발생을 예상하지 못하는 것

[잘못]+[실수]



영상보기
(II-3-25)

▶ 손해배상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여(갚아주어)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원상회복)

[피해]+[돈 받다(왼손바닥 위에 올려댄다)]



영상보기
(II-3-26)

▶ 과실상계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채권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를 결정할 때 이를 참작하는 것

① [잘못]+[비율(양손 1, 2지를 상하로 엇갈리게)]+[계산]



② [잘못]+[점수]+[비율(양손 1, 2지를 상하로 엇갈리게)]



영상보기
(II-3-27)



1. 소송구조

1) 소송구조

소송구조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입을 유예(미루어주는 것)하거나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민사, 행정, 가사소송은 물론이고 보전소송(보전처분을 위한 소송)도 소송구조의 대상이 되며 소 제기 전이나 소 제기 후에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매우 가난하여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없다는 점(무자력)을 법원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면 소송구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영상보기
(Ⅲ-1-1)

2) 법률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법률지식이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한 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소송을 위한 서면을 작성해 주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 되어 소송을 진행해 주기도 합니다(소송대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125% 이하인 장애인은 법률구조대상자이며 특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는 전액 무료로 소송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등에서도 무료로 소송대리를 해 주는 등 법률구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보기
(Ⅲ-1-2)

2. 장애인 사법지원¹⁾

1) 제도 개관

장애인 사법지원이란 소송절차에 참여하는 사람이 장애로 인하여 불편을 겪지 않도록 법원에서 필요한 편의제공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 증인, 감정인 등으로 참여하거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경우 사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보기
(Ⅲ-2-1)

2) 사법지원의 내용

사법지원의 내용은 수어통역, 문자통역, 보청기, 확대경, 문서를 변환하여 읽을 수 있는 파일,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휠체어 기타 이동을 위한 지원, 활동(이동)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보조인력, 휴식시간의 보장 등으로 장애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지원으로는 수어통역과 문자통역을 들 수 있는데 두 가지 모두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위 통역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영상보기
(Ⅲ-2-2)

1)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참고. https://help.scourt.go.kr/nm/min_16/min_16_9/index.html

3) 신청방법

장애인 사법지원을 원하는 경우 변론기일 전에 장애인 사법지원(편의제공)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면 되고, 특히 통역을 원할 경우 장애인을 위한 통역 안내문에 답변을 적어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 농통역사가 통역을 하도록 할 수 있고 법원에서 지정하는 수어통역인 외에 당사자가 통역인으로 데리고 함께 온 사람을 수어통역인으로 지정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모든 사법지원 신청이 다 허가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영상보기
(III-2-3)



※ 본인의 장애 상태를 법원에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의 질문지에
 답하여 앞면의 장애인 사법지원(편의제공)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 중 본인의 장애 유형과 관계있는 질문에만 답하시면 됩니다.

[시각장애 관련]

가. 시각장애로 인해 글자를 읽거나 사람을 알아보기 어렵다면, 다음 중 해당하는 내용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까이서 보거나 돋보기를 이용하면 글자를 읽을 수 있다. 읽을 수 있는 글자의 크기는 ()이다.

① 법원(10p) ② 법원(20p)

③ 법원(30p) ④ 법원(40p)

2) 돋보기와 같은 보조도구를 이용해도 일반적으로 글자를 읽기 어렵지만, 확대인쇄물
 은 읽을 수 있다.()

3) 점자를 읽고 이해할 수 있다.()

4) 전자파일을 음성으로 바꿔 들을 수 있는 기계를 가지고 있거나, 가까운 곳에서 그러
 한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5) 시각장애로 인해 법원 청사 안팎을 다닐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6) 기타(그 밖에 법원에 알리고 싶은 장애 관련 사정을 아래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관련]

나. 청각장애로 인해 다른 사람의 말을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없다면, 다음 중 해당하는
 내용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상대화가 잘 들리지 않지만, 가까이서 큰 소리로 또박또박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
 고, 말을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다.()

2) 일상적인 말을 직접 듣기는 어렵지만, 보청기를 사용하면 알아들을 수 있고, 말을 하
 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다.()

3) 소리를 듣기는 어렵지만, 수어를 이해할 수 있다.() 글자를 읽을 수 있다.()
 구화를 배워 상대방의 입 모양을 보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 4) 말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수어를 구사할 수 있다.() 글자를 써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컴퓨터 자판을 쉽게 다룰 수 있다.()
- 5) 수어로 의사를 소통하는 것이 가장 편하다.() 글자를 통해 의사를 소통하는 것이 가장 편하다.() 모두 필요하다.()
- 6) 기타(그 밖에 법원에 알리고 싶은 장애 관련 사정을 아래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지체장애 관련]

다. 몸이 불편하여 재판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다음 중 해당하는 내용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몸이 불편해 이동에 어려움이 있지만, 휠체어나 목발과 같은 보조기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 조금만 도와주면 이동에 큰 불편은 없다.()
- 2) 몸이 불편해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데 적절한 보조기구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휠체어와 같은 보조기구를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 여기에 해당하면 구체적으로 원하는 보조기구를 쓰시기 바랍니다).
- 3) 몸이 불편해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도와줄 보조인이 필요하다(☞ 여기에 해당하면 구체적으로 원하는 도움의 내용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는 있지만 굴릴 힘이 없어 누군가가 계속 뒤에서 밀어주어야 한다는 등).
- 4) 몸이 불편해 오랜 시간 재판받기가 어려우므로, 재판이 길어질 경우 중간에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여기에 해당하면 구체적인 몸 상태를 쓰시기 바랍니다).
- 5) 몸이 불편해 생각을 밖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우므로 내 의사를 잘 전달해 줄 보조인이 필요하다(☞ 여기에 해당하면 보조인을 함께 데려올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보조인은 누구인지를 쓰시기 바랍니다).

[기타]

라. 위에서 설명한 내용 외에 재판을 받는 데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거나 법원에 바라는 장애인 편의 제공 서비스가 있다면 아래에 쓰시기 바랍니다.

3. 전자소송

1) 개관

전자소송은 기존에 종이로 된 서류 대신 인터넷을 이용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서 서면이나 신청서 등 각종 서류 제출, 소송비용 납부, 송달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송달된 문서나 사건기록 열람, 소송 진행 과정의 확인, 각종 증명서 발급 등이 모두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종이 문서를 출력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송달료 등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영상보기
(III-3-1)

2) 이용방법

전자소송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증서를 준비한 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먼저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는 자주 활용하는 소송서류가 구비되어 있으므로 원하는 서류를 조회한 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면 작성 후에는 입증자료나 첨부서류를 파일 형태로 첨부할 수 있고 인지액이나 송달료, 민사 예납금 등 비용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서명을 하면 서면이 제출됩니다.



영상보기
(III-3-2)

전자송달확인 메뉴에서는 미확인송달문서 확인, 전체송달문서 확인, 판결문전자송달 신청 및 조회, 송달상세내역 조회, 정(등)본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진행 중인 사건기록의 열람, 출력, 저장, 변론기일 확인 등 소송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며, 다양한 편의기능이 제공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 화면은 <그림 1>와 같습니다.



〈그림 1〉 전자소송 사이트

용어 색인

ㄱ

가압류	15
가집행선고	91
가처분	15
각하	37
각하판결(소송판결)	90
감정	55
감치	82
강제경매	101
강제집행	100
검증	55
계약	126
계약금	128
고의	133
공문서	73
공시송달	38
공탁	124
과실	133
과실상계	134
구인	81
기각판결	91
기일해태	63
기판력	95
기한	113

ㄴ

단독판사	10
답변서	42
도급	132
독촉절차	13

동산	115
등본	55

ㄷ

면제	125
무효	110
물권	114
미성년자	20
민사재판	10
민사조정	12

ㄹ

반소	42
법령위반	98
법인	18
법정대리인	22
변론	59
변론기일	60
변론종결	42
변론준비절차	60
변제	124
보전처분	14
보정명령	36
보증채무	122
부당이득	132
부동산	115
부인	70
부지	71
불법행위	132

ㄴ

사건명	30
사건번호	35
사문서	74
사용대차	130
상계	124
상고	98
성년후견인	21
소가	11
소멸시효	113
소비대차	128
소송계속	57
소송비용	108
소송상화해	86
소액사건심판제도	11
소유권	116
소의 취하간주(쌍불취하)	61
소장	29
소장심사	35
손해배상	134
송달불능	37
심리	61
심리불속행	98

ㅇ

약정이자	123
연대채무	122
원고	16
원심법원	99
유치권	118

의사능력	109
인영	74
인용판결	90
인지	33
임대차	131
입증취지	49

ㄷ

자백	70
자연인	17
작성명의인	73
재산명시	106
재산조회	106
저당권	119
전부명령	102
전세권	117
점유권	116
제소전화해	12
제척기간	114
조건	112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	87
종국판결	90
준비서면	46
즉시항고	38
증거방법	30
증명책임(입증책임, 거증책임)	47
증여	127
지상권	117
지역권	117
진술보조인	25
진정성립	73

질권	118
집행권원	101
집행문	101

ㄸ

채권	120
채권자	120
채무	121
채무불이행	123
채무자	121
철회	112
청구 인낙	85
청구 포기	85
청구원인	30
청구의 변경	31
청구취지	29
추심명령	101
취소	111
친권자	23
침묵	70

ㅍ

특별송달	37
------	----

ㅊ

판결경정	94
판결이유	94
판결주문	94
피고	17
피성년후견인	20

피한정후견인	21
--------	----

ㅎ

한정후견인	22
합의부	11
항소	97
해제	127
해지	126
행위능력	110
화해권고결정	87

책임연구원 최상배
공동연구원 안석준, 김성완, 민병화, 최지영, 이정민
연구보조원 고은지
모델 박찬현, 이재란
촬영·편집 이승수
감수위원 유명희, 이경례

감수 윤준석(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권형관(대구고등법원 판사)
강지성(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차성안(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수정(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주언(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민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

인쇄일	2021년 11월
발행일	2021년 11월
연구기관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발행처	법원행정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전화	02-3480-1262

민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



법원행정처